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조성태 외 1명 소유물건 (2023타경6945)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8계 사법보좌관 노일
평가서 번호	대화 10-2310-2-007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AE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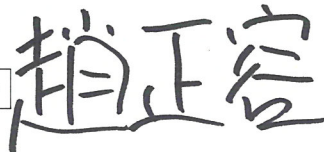
(주)대화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지평프라자 201호
대표전화 : (031)905-9008 FAX : (031)905-9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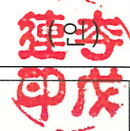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조정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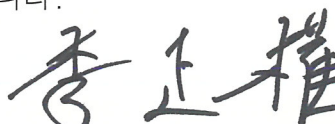
(주)대화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지사장 이 무 연



감정평가액	이십육억칠천칠백이십육만칠천원정 (₩2,677,267,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8계 사법보좌관 노일	평가목적 (제출처)	경매 (제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8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조성태 외 1명 (2023타경6945)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4. 03. 18	2023. 10. 19 ~ 2024. 03. 18
		작성일	2024.03.19

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평	토지	11,753	토지	11,753	-	2,677,267,000
가	합계					₩2,677,267,000.-
내		이	하	여	백	
용						

심사확인	<p>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p> <p>심사자 : 감정평가사 </p> <p>[이정권]</p>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대상물건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 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소재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8계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 현황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기호	지 번	면 적 (㎡)	지 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토지	1	359	2,942	답	자연녹지	답	세로(가)	부정형/평지	86,500
	2	465-1	2,079	유원지	자연녹지	개발행위허가지1,2	세로(가)	부정형/평지	93,500
	3	465-2	60	답	자연녹지	답	맹지	부정형/평지	93,500
	4	465-4	1,798	답	자연녹지	답	맹지	부정형/평지	93,500
	5	465-5	251	유원지	자연녹지	개발행위허가지1	세로(가)	부정형/평지	93,500
	6	465-6	338	유원지	자연녹지				93,500
	7	466	1,350	유원지	자연녹지	개발행위허가지2	세로(가)	부정형/평지	93,500
	8	466-1	608	답	일반공업				148,300
	9	466-2	52	답	자연녹지				93,500
	10	469-2	450	답	자연녹지	휴경지	세로(가)	부정형/평지	115,900
	11	469-4	46	전	자연녹지	전	맹지	부정형/평지	86,7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호	지 번	면 적 (㎡)	지 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개별공시지 가 (원/㎡)
토지	12	469-5	179	답	자연녹지	전	맹지	사다리/평지	78,000
	13	469-6	177	답	자연녹지	휴경지	세로(가)	사다리/평지	121,700
	14	469-7	71	도로	자연녹지	도로	-	-	69,300
	15	470-1	591	대	자연녹지	주거나지	세로(가)	사다리/평지	201,700
	16	470-2	265	잡종지	자연녹지	잡종지	세로(가)	사다리/평지	205,900
	17	470-3	16	도로	자연녹지	도로	-	-	69,300
	18	470-4	343	답	자연녹지	휴경지	세로(가)	사다리/평지	128,800
	19	470-5	84	도로	자연녹지	도로	-	-	69,300
	20	470-6	53	도로	자연녹지	도로	-	-	69,300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4년 03월 18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03월 18일까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 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3. 특이 및 유의사항

가. 본 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 등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나. 본 건 감정평가시 인용한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세부지번은 "***"처리 하였으니 참고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방법

1. 감정평가 방법의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 ① 비용성에 기초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원가법,
- ② 시장성에 기초하여 대상물건과 동일·유사한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
- ③ 수익성에 기초하여 대상물건의 장래 현금흐름 등을 할인·환원하는 수익환원법,
- ④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보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평가방법과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되, 다른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그 밖의 감정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건 토지 기호(2 일부, 5, 6) 및 기호(2 일부, 7, 8, 9)는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필요하였으며, 기준 시점 현재 개발행위허가필증상 허가기간(2017.05~2023.05.08)이 도과한 상태이나, 첨부된 파주시 청 사실조회회신 및 유선상(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허가1과) 기준시점 현재 개발행위허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나. 본 건 토지는 2022년 05월 09일자로 경기도 파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연장 받았으며, 개발행위허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발행위(변경)허가필증

구분	토지형질변경	허가번호	제2017-228-3호
신청인	이 상 준		
신청지	법원읍 법원리 465-1, -5, -6, 469-2, 470-2, -4		
공부상면적	3,726㎡	허가면적	2,255㎡ (도로 187㎡)
지목	원, 답, 전	목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부지조성
허가기간	2017. 5 ~ 2023. 5. 8		

※ 개발행위(변경)허가필증

구분	토지형질변경	허가번호	제2017-227-3호
신청인	조 성 태		
신청지	법원읍 법원리 466, -1, -2, 465-1		
공부상면적	4,089㎡	허가면적	2,544㎡ (도로 24㎡)
지목	원, 답	목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부지조성
허가기간	2017. 5 ~ 2023. 5. 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출처 : 개발행위(변경)허가필증 및 구적도]

기호	소재지	대지면적(m ²)	개발행위허가 세부사항	
			허가면적(m ²)	도로예정지(m ²)
2	465-1	2,079	1,479	66
5	465-5	251	251	-
6	465-6	338	338	-
10	469-2	450	-	51
16	470-2	265	-	55
18	470-4	343	-	15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출처 : 개발행위(변경)허가필증 및 구적도]

기호	소재지	대지면적(m ²)	개발행위허가 세부사항	
			허가면적(m ²)	도로예정지(m ²)
2	465-1	2,079	516	18
7	466	1,350	1,344	6
8	466-1	608	608	-
9	466-2	52	52	-

다. 본 건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토지 기호(15) 지상 위 제시외물건 ㉠~㉢, 토지 기호(1) 지상 위 제시외물건㉣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토지의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매됨 없이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근거

1. 감정평가 개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및 제14조 제2항에 의거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 선정

- ① 기준시점 현재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24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함.
- ② 위의 표준지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공시기준일 : 2024.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법원리 366	1,570	답	전	자연녹지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83,600	-
B	법원리 472-4	322	대	단독주택	자연녹지	세로(가)	사다리 평지	210,200	-
C	법원리 467	6,434	답	전	일반공업	세로(가)	부정형 평지	141,3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 소재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발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경기도 파주시 녹지지역>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4.01.01 ~ 2024.01.31	0.006%	$(1 + 0.00006) * (1 + 0.00006 * 47/31)$ ≈ 1.00015
2024.01.01 ~ 2024.03.18	0.015% (1.00015)	

<경기도 파주시 공업지역>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4.01.01 ~ 2024.01.31	0.037%	$(1 + 0.00037) * (1 + 0.00037 * 47/31)$ ≈ 1.00093
2024.01.01 ~ 2024.03.18	0.093% (1.00093)	

다.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별요인 비교치는 다음과 같음.

■ 대상토지 기호[1~7, 9~14, 16~20] / 비교표준지(A)

개별요인 비교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대상토지 기호[15] / 비교표준지(B)

개별요인 비교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대상토지 기호(8) / 비교표준지(C)

개별요인 비교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두
환경조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동력자원
		공업용수
	자연환경	공장배수
획지조건	면적, 형상 등	지반, 지질 등
		면적
		형상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고저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기타규제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대상 토지	비교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계
1	A	-	1.08	1.00	1.00	1.00	1.00	1.080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세로(가)/세로(불))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함.							
2 일부,5,6 (허가지1)	A	-	1.08	1.00	1.00	1.05	1.00	1.134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세로(가)/세로(불))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하며,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적 조건에서 우세함.							
3	A	-	1.00	1.00	0.90	1.00	1.00	0.900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함.							
4	A	-	0.95	1.00	1.00	1.00	1.00	0.950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맹지/세로(불))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함.							
2 일부,7,9 (허가지2)	A	-	1.08	1.00	1.00	1.05	1.00	1.134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세로(가)/세로(불))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하며,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적 조건에서 우세함.							
8	C	1.00	1.00	1.00	1.00	1.05	1.00	1.050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적 조건에서 우세함.							
10	A	-	1.08	1.00	1.00	1.00	1.00	1.080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세로(가)/세로(불))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함.							
11	A	-	0.95	1.00	0.95	1.00	1.00	0.903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함.							
12	A	-	1.00	1.00	1.00	1.00	1.00	1.000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개별요인이 대체로 유사함.							
13	A	-	1.08	1.00	1.00	1.00	1.00	1.080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세로(가)/세로(불))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함.							
14	A	-	1.08	1.00	1.00	1.00	0.33	0.356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하나, 지목 및 현황 '도로'로 개별요인이 전반적으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5	B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개별요인이 대체로 유사함.							
16	A	-	1.08	1.00	1.10	1.10	1.00	1.307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세로(가)/세로(불))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하며, 획지의 조성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우세하고, 지목(잡종지/전) 등 행정적 조건에서 우세함.							
17	A	-	1.08	1.00	1.00	1.00	0.33	0.356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하나, 지목 및 현황 '도로'로 개별요인이 전반적으로 열세함.							
18	A	-	1.08	1.00	1.00	1.00	1.00	1.080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세로(가)/세로(불))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함.							
19	A	-	1.08	1.00	1.00	1.00	0.33	0.356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하나, 지목 및 현황 '도로'로 개별요인이 전반적으로 열세함.							
20	A	-	1.08	1.00	1.00	1.00	0.33	0.356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하나, 지목 및 현황 '도로'로 개별요인이 전반적으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30241-36538,1991.12.28.), 대법원판례(1998.7.10. 선고 98두6067, 1993.9.10. 선고 92누1630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방식

$$\frac{\text{비교사례 기준 표준지 단가}}{\text{시점수정한 표준지 단가}} = \frac{\text{비교사례 단가}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치}}{\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치}}$$

(3) 인근 평가사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기준시점	평가단가 (원/㎡)	개별지가 (원/㎡)	평가 목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비 고
평가 사례1	법원리 ***	2,774	답	2022.03.10	173,000	82,600	농지 매입	답	자연 녹지	선정[맹지, 부정형/평지]
평가 사례2	법원리 ***_**	275	잡	2023.03.17	334,000 (평균단가)	118,300	공매	전기타	자연 녹지	-
평가 사례3	가야리 **외	3,303	장	2022.12.30	370,000	185,100	자산 재평가	공업용	자연 녹지	선정[세로(가), 부정형/평지]
평가 사례4	법원리 ***_외	2,725	답	2022.10.19	334,000	144,500	담보	신고필	일반 공업	-
평가 사례5	법원리 ***_외	4,748	장	2021.05.24	430,000	236,500	시가 참고	공업용	일반 공업	선정[세로(가), 사다리/평지]

※ 상기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시점 해당 년도의 개별공시지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인근 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 사례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				
	거래시점	2021.04.25	거래가액(원)		174,000,000	
	토지	용도지역	면적(m ²)	지목	개별공시지가 (원/m ²)	
		자연녹지	586	전	170,100	
특성: 자연취락지구, 전, 세각(가), 부정형, 완경사						
토지단가(원/m ²)		산식: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m ²) = 토지단가(원/m ²)				
		174,000,000 ÷ 586 = @297,000				
거래 사례 2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				
	거래시점	2023.06.26	거래가액(원)		146,300,000	
	토지	용도지역	면적(m ²)	지목	개별공시지가 (원/m ²)	
		자연녹지	347	대	161,400	
특성: 단독주택, 세로(가), 사다리, 평지						
토지단가(원/m ²)		산식: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m ²) = 토지단가(원/m ²)				
		146,300,000 ÷ 347 = @422,000				
거래 사례 3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외				
	거래시점	2022.06.10	거래가액(원)		5,000,000,000	
	토지	용도지역	면적(m ²)	지목	개별공시지가 (원/m ²)	
		일반공업	7,305	공장용지, 대, 잡종지	319,500	
	특성: 공업용, 소로각지, 부정형, 평지					
	건물	용도	연면적(m ²)		사용승인일자	
		공장	1,970.83		2007.11.22	
창고시설		63.05		2011.03.21		
창고시설		390		2003.03.24		
구조: 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판넬), 각파이프/기타지붕(판넬), 경량철골구조/기타지붕						
배분법에 의한 토지단가(원/m ²)		산식: {거래가액(원) - (건물가액(원))} ÷ 토지면적(m ²) = 토지단가(원/m ²)				
		{ 5,000,000,000 - [(900,000×26/40×1,970.83) + (350,000×24/35×63.05) + (650,000×21/40×390)] } ÷ 7,305 = @50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비교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며 근거리에 위치하는 <평가사례1,3,5>를 비교사례로 각각 선정하였음.

(6) 보정치의 산정

구 분	기준단가(원/㎡)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시산가액 (원/㎡)	격차율
	공시지가(원/㎡)					
평가사례(1) 기준 표준지(A) 단가	173,000	1.02305	1.000	1.15	203,536	2.434
시점수정한 표준지(A)가액	83,600	1.00015	-	-	83,613	

산 정 내 역

시점수정	경기도 파주시 녹지지역(2022.03.10 ~ 2024.03.18) : 1.02305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대등함. (1.000)					
개별요인 비교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표준지는 평가사례 대비 취락과의 접근성 및 농로의 상태(세로(불)/맹지)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함.						

구 분	기준단가(원/㎡)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시산가액 (원/㎡)	격차율
	공시지가(원/㎡)					
평가사례(3) 기준 표준지(B) 단가	370,000	1.00075	1.000	1.112	411,749	1.959
시점수정한 표준지(B)가액	210,200	1.00015	-	-	210,232	

산 정 내 역

시점수정	경기도 파주시 녹지지역(2022.12.30 ~ 2024.03.18) : 1.00075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대등함. (1.000)						
개별요인 비교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00	1.00	1.08	1.03	1.00	1.00	1.112
비교표준지는 평가사례 대비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환경조건에서 우세하고,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다소 우세하여 개별요인 전반적으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구 분	기준단가(원/㎡)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시산가액 (원/㎡)	격차율
	공시지가(원/㎡)					
평가사례(5) 기준 표준지(C) 단가	430,000	1.04288	1.000	0.652	292,382	2.067
시점수정한 표준지(C)가액	141,300	1.00093	-	-	141,431	

산 정 내 역

시점수정	경기도 파주시 공업지역(2021.05.24 ~ 2024.03.18) : 1.04288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대등함. (1.000)						
개별요인 비교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00	0.95	0.85	0.85	0.95	1.00	0.652
비교표준지는 평가사례 대비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접근조건 및 인근토지와와의 이용상황 등 환경조건 및 획지의 조성정도 등 획지조건 및 지목(답/대) 등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하여 개별요인 전반적으로 열세함.							

[7] 인근지역 정상지가 수준 등 검토

가) 인근지 호가수준

용도지역	토지용도	가격수준	비 고
자연녹지지역	전/답	@250,000원/㎡ 내외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
	잡종지	@300,000원/㎡ 내외	
	대	@450,000원/㎡ 내외	
일반공업지역	전/답	@300,000원/㎡ ~ @320,000원/㎡ 내외	

나) 최근 1년간 경매 낙찰가율 (2023.03.01 ~ 2024.02.29)

<자료출처 : 인포케어>

용 도	소 재 지	낙찰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 건수
토지/전체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72.1	63.28	10건

※ 낙찰가율 : 총낙찰가 / 총감정가

※ 낙찰률평균 : 낙찰가율합계 / 낙찰건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8)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보 정 내 용	적용 보정치	
	인근지역의 정상지가 수준, 평가사례, 거래사례 및 장래동향,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평가액 결정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증액 적용함이 타당시 됨.	A
B		1.95
C		2.06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산식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기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83,600	1.00015	1.000	1.080	2.43	219,433	219,000
2 일부,5,6 (허가지1)	83,600	1.00015	1.000	1.134	2.43	230,404	230,000
3	83,600	1.00015	1.000	0.900	2.43	182,861	183,000
4	83,600	1.00015	1.000	0.950	2.43	193,020	193,000
2 일부,7,9 (허가지2)	83,600	1.00015	1.000	1.134	2.43	230,404	230,000
8	141,300	1.00093	1.000	1.050	2.06	305,916	306,000
10	83,600	1.00015	1.000	1.080	2.43	219,433	219,000
11	83,600	1.00015	1.000	0.903	2.43	183,470	183,000
12	83,600	1.00015	1.000	1.000	2.43	203,178	203,000
13	83,600	1.00015	1.000	1.080	2.43	219,433	219,000
14	83,600	1.00015	1.000	0.356	2.43	72,332	7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산식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기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5	210,200	1.00015	1.000	1.000	1.95	409,951	410,000
16	83,600	1.00015	1.000	1.307	2.43	265,554	266,000
17	83,600	1.00015	1.000	0.356	2.43	72,332	72,000
18	83,600	1.00015	1.000	1.080	2.43	219,433	219,000
19	83,600	1.00015	1.000	0.356	2.43	72,332	72,000
20	83,600	1.00015	1.000	0.356	2.43	72,332	72,000

※ 기호(2,7) 도로예정지 단가 : @230,000원/㎡ × 1/3 ≒ @76,000원/㎡

※ 기호(10) 도로예정지 단가 : @219,000원/㎡ × 1/3 ≒ @73,000원/㎡

※ 기호(16) 도로예정지 단가 : @266,000원/㎡ × 1/3 ≒ @88,000원/㎡

※ 기호(18) 도로예정지 단가 : @219,000원/㎡ × 1/3 ≒ @73,000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대상토지	토지면적(㎡)	토지단가(원/㎡)	토지가액(원)
기호(1)	2,942	219,000	644,298,000
기호(2)	1,479(허가지1)	230,000	340,170,000
	516(허가지2)	230,000	118,680,000
	84(도로예정지)	76,000	6,384,000
기호(3)	60	183,000	10,980,000
기호(4)	1,798	193,000	347,014,000
기호(5)	251(허가지1)	230,000	57,730,000
기호(6)	338(허가지1)	230,000	77,740,000
기호(7)	1,344(허가지2)	230,000	309,120,000
	6(도로예정지)	76,000	456,000
기호(8)	608(허가지2)	306,000	186,048,000
기호(9)	52(허가지2)	230,000	11,960,000
기호(10)	399	219,000	87,381,000
	51(도로예정지)	73,000	3,723,000
기호(11)	46	183,000	8,418,000
기호(12)	179	203,000	36,337,000
기호(13)	177	219,000	38,763,000
기호(14)	71	72,000	5,112,000
기호(15)	591	410,000	242,310,000
기호(16)	210	266,000	55,860,000
	55(도로예정지)	88,000	4,840,000
기호(17)	16	72,000	1,152,000
기호(18)	328	219,000	71,832,000
	15(도로예정지)	73,000	1,095,000
기호(19)	84	72,000	6,048,000
기호(20)	53	72,000	3,816,000
합 계	11,753	-	2,677,26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사정면적 (㎡)	단 가 (원/㎡)	감정평가액 (원)
토지	기호(1~20)	11,753	-	2,677,26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근거

1. 감정평가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 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 거래사례 선정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 사례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			
	거래시점	2021.04.25	거래가액(원)		174,000,000
	토지	용도지역	면적(m ²)	지목	개별공시지가 (원/m ²)
		자연녹지	586	전	170,100
특성: 자연취락지구, 전, 세각(가), 부정형, 완경사					
토지단가(원/m ²)		산식: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m ²) = 토지단가(원/m ²)			
		174,000,000 ÷ 586 = @297,000			
거래 사례 2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			
	거래시점	2023.06.26	거래가액(원)		146,300,000
	토지	용도지역	면적(m ²)	지목	개별공시지가 (원/m ²)
		자연녹지	347	대	161,400
특성: 단독주택, 세로(가), 사다리, 평지					
토지단가(원/m ²)		산식: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m ²) = 토지단가(원/m ²)			
		146,300,000 ÷ 347 = @42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거래 사례 3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외			
	거래시점	2022.06.10	거래가액(원)	5,000,000,000	
	토지	용도지역	면적(m ²)	지목	개별공시지가 (원/m ²)
		일반공업	7,305	공장용지, 대, 잡종지	319,500
	특성: 공업용, 소로각지, 부정형, 평지				
	건물	용도	연면적(m ²)	사용승인일자	
		공장	1,970.83	2007.11.22	
		창고시설	63.05	2011.03.21	
		창고시설	390	2003.03.24	
	구조: 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판넬), 각파이프/기타지붕(판넬), 경량철골구조/기타지붕				
배분법에 의한 토지단가(원/m ²)	산식: {거래가액(원) - (건물가액(원))} ÷ 토지면적(m ²) = 토지단가(원/m ²)				
	{ 5,000,000,000 - [(900,000×26/40×1,970.83) + (350,000×24/35×63.05) + (650,000×21/40×390)] } ÷ 7,305 ≈ @506,000				

-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래사례1~3>을 선정하였음.

나. 사정보정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액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 ① 거래사례1,2가 소재하는 경기도 파주시 녹지지역의 경우 거래시점(2021.04.25/2023.06.26)로부터 기준시점(2024.03.18)까지 지가변동률은 다음과 같음.
- ② 거래사례3이 소재하는 경기도 파주시 공업지역의 경우 거래시점(2022.06.10)로부터 기준시점(2023.03.18)까지 지가변동률은 다음과 같음.
- ③ 기준시점 당시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하여 최종 발표 월(2024년 01월분)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경기도 파주시 녹지지역)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1.04.25 ~ 2024.03.18 <거래사례1>	4.378% (1.04378)	$(1 + 0.00137 * 6/30) * (1 + 0.00054) * (1 + 0.00195) * (1 + 0.00196) * (1 + 0.00236) * (1 + 0.00175) * (1 + 0.00175) * (1 + 0.00166) * (1 + 0.00213) * (1 + 0.02818) * (1 + 0.00055) * (1 + 0.00006) * (1 + 0.00006 * 47/31) \approx 1.04378$

(경기도 파주시 녹지지역)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3.06.26 ~ 2024.03.18 <거래사례2>	0.178% (1.00178)	$(1 + 0.00035 * 5/30) * (1 + 0.00036) * (1 + 0.00078) * (1 - 0.00124) * (1 + 0.00034) * (1 - 0.00026) * (1 + 0.00159) * (1 + 0.00006) * (1 + 0.00006 * 47/31) \approx 1.00178$

(경기도 파주시 공업지역)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2.06.10 ~ 2024.03.18 <거래사례3>	1.786% (1.01786)	$(1 + 0.00245 * 21/30) * (1 + 0.00100) * (1 + 0.00303) * (1 + 0.00249) * (1 + 0.00190) * (1 + 0.00024) * (1 - 0.00121) * (1 + 0.00765) * (1 + 0.00037) * (1 + 0.00037 * 47/31) \approx 1.01786$

라.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대상 토지	거래 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	1	-	0.85	1.00	0.96	0.90	1.00	0.734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거래사례는 자연취락지구 내에 소재하는 등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하여 개발요인이 열세함.							
2 일부,5,6 (허가지1)	1	-	0.85	1.00	0.96	0.95	1.00	0.775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대상토지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우세하나, 거래사례 자연취락지구 내에 소재하는 등에서 열세하여 전반적인 행정적 조건이 열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3	1	-	0.77	1.00	0.86	0.90	1.00	0.596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자연취락지구 등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하여, 개별요인이 열세함.							
4	1	-	0.72	1.00	0.96	0.90	1.00	0.622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자연취락지구 등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함.							
2 일부,7,9 (허가지2)	1	-	0.85	1.00	0.96	0.95	1.00	0.775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대상토지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우세하나, 거래사례 자연취락지구 내에 소재하는 등에서 열세하여 전반적인 행정적 조건이 열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8	3	0.90	0.95	0.85	0.85	0.95	1.00	0.587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가로의 폭(세로(가)/소로한면) 및 계통의 연속성 등 가로조건에서 열세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고,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 환경조건에서 열세하며, 획지의 조성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지목(답/장)에서 열세하여 전반적인 행정적 조건이 열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10	1	-	0.85	1.00	0.96	0.90	1.00	0.734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거래사례는 자연취락지구 내에 소재하는 등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함.							
11	1	-	0.72	1.00	0.92	0.90	1.00	0.596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자연취락지구 등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함.							
12	1	-	0.77	1.00	0.96	0.90	1.00	0.665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자연취락지구 등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계
13	1	-	0.85	1.00	0.96	0.90	1.00	0.734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거래사례는 자연취락지구 내에 소재하는 등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하여, 개발요인이 열세함.							
14	1	-	0.85	1.00	0.96	0.90	0.33	0.242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자연취락지구 등 행정적 조건 및 지목 및 현황 도로로 개별요인 전반적으로 열세함.							
15	2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대상토지와 거래사례는 개별요인이 대체로 유사함.							
16	1	-	0.85	1.00	1.06	0.99	1.00	0.892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에서 열세하나 조성 정도 등에서 우세하여 획지조건은 우세하나,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 조건에서 열세하고, 행정적 조건에서 지목(잡/전)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취락지구 등에서 열세하여 행정적 조건이 열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17	1	-	0.85	1.00	0.96	0.90	0.33	0.242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자연취락지구 등 행정적 조건 및 지목 및 현황 도로로 개별요인 전반적으로 열세함.							
18	1	-	0.85	1.00	0.96	0.90	1.00	0.734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소재하는 등 행정적 조건에서 열세함.							
19	1	-	0.85	1.00	0.96	0.90	0.33	0.242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자연취락지구 등 행정적 조건 및 지목 및 현황 도로로 개별요인 전반적으로 열세함.							
20	1	-	0.85	1.00	0.96	0.90	0.33	0.242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며, 접면도로의 상태 및 형상부정의 정도 등 획지조건에서 열세하고, 자연취락지구 등 행정적 조건 및 지목 및 현황 도로로 개별요인 전반적으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산식 : 거래사례 토지단가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기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원/m ²)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m ²)	결정단가 (원/m ²)
1	297,000	1.000	1.04378	1.000	0.734	227,542	228,000
2 일부,5,6 (허가지1)	297,000	1.000	1.04378	1.000	0.775	240,252	240,000
3	297,000	1.000	1.04378	1.000	0.596	184,762	185,000
4	297,000	1.000	1.04378	1.000	0.622	192,822	193,000
2 일부,7,9 (허가지2)	297,000	1.000	1.04378	1.000	0.775	240,252	240,000
8	506,000	1.000	1.01786	1.000	0.587	302,327	302,000
10	297,000	1.000	1.04378	1.000	0.734	227,542	228,000
11	297,000	1.000	1.04378	1.000	0.596	184,762	185,000
12	297,000	1.000	1.04378	1.000	0.665	206,152	206,000
13	297,000	1.000	1.04378	1.000	0.734	227,542	228,000
14	297,000	1.000	1.04378	1.000	0.242	75,021	75,000
15	422,000	1.000	1.00178	1.000	1.000	422,751	423,000
16	297,000	1.000	1.04378	1.000	0.892	276,522	277,000
17	297,000	1.000	1.04378	1.000	0.242	75,021	75,000
18	297,000	1.000	1.04378	1.000	0.734	227,542	228,000
19	297,000	1.000	1.04378	1.000	0.242	75,021	75,000
20	297,000	1.000	1.04378	1.000	0.242	75,021	75,000

※ 기호(2,7) 도로예정지 단가 : @240,000원/m² X 1/3 ≒ @80,000원/m²

※ 기호(10) 도로예정지 단가 : @228,000원/m² X 1/3 ≒ @76,000원/m²

※ 기호(16) 도로예정지 단가 : @277,000원/m² X 1/3 ≒ @92,000원/m²

※ 기호(18) 도로예정지 단가 : @228,000원/m² X 1/3 ≒ @76,000원/m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대상토지	토지면적(m ²)	토지단가(원/m ²)	토지가액(원)
기호(1)	2,942	228,000	670,776,000
기호(2)	1,479(허가지1)	240,000	354,960,000
	516(허가지2)	240,000	123,840,000
	84(도로예정지)	80,000	6,720,000
기호(3)	60	185,000	11,100,000
기호(4)	1,798	193,000	347,014,000
기호(5)	251(허가지1)	240,000	60,240,000
기호(6)	338(허가지1)	240,000	81,120,000
기호(7)	1,344(허가지2)	240,000	322,560,000
	6(도로예정지)	80,000	480,000
기호(8)	608(허가지2)	302,000	183,616,000
기호(9)	52(허가지2)	240,000	12,480,000
기호(10)	399	228,000	90,972,000
	51(도로예정지)	76,000	3,876,000
기호(11)	46	185,000	8,510,000
기호(12)	179	206,000	36,874,000
기호(13)	177	228,000	40,356,000
기호(14)	71	75,000	5,325,000
기호(15)	591	423,000	249,993,000
기호(16)	210	277,000	58,170,000
	55(도로예정지)	92,000	5,060,000
기호(17)	16	75,000	1,200,000
기호(18)	328	228,000	74,784,000
	15(도로예정지)	76,000	1,140,000
기호(19)	84	75,000	6,300,000
기호(20)	53	75,000	3,975,000
합 계	11,753	-	2,761,44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사정면적 (㎡)	단 가 (원/㎡)	감정평가액 (원)
토지	기호(1~20)	11,753	-	2,761,44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I. 감정평가액 결정

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단위 : 원)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비 고
토 지	2,677,267,000	2,761,441,000	-

2. 시산가액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액 결정

대상토지	토지면적(㎡)	토지단가(원/㎡)	토지가액(원)
기호(1)	2,942	219,000	644,298,000
기호(2)	1,479(허가지1)	230,000	340,170,000
	516(허가지2)	230,000	118,680,000
	84(도로예정지)	76,000	6,384,000
기호(3)	60	183,000	10,980,000
기호(4)	1,798	193,000	347,014,000
기호(5)	251(허가지1)	230,000	57,730,000
기호(6)	338(허가지1)	230,000	77,740,000
기호(7)	1,344(허가지2)	230,000	309,120,000
	6(도로예정지)	76,000	456,000
기호(8)	608(허가지2)	306,000	186,048,000
기호(9)	52(허가지2)	230,000	11,960,000
기호(10)	399	219,000	87,381,000
	51(도로예정지)	73,000	3,723,000
기호(11)	46	183,000	8,418,000
기호(12)	179	203,000	36,337,000
기호(13)	177	219,000	38,763,000
기호(14)	71	72,000	5,112,000
기호(15)	591	410,000	242,310,000
기호(16)	210	266,000	55,860,000
	55(도로예정지)	88,000	4,840,000
기호(17)	16	72,000	1,152,000
기호(18)	328	219,000	71,832,000
	15(도로예정지)	73,000	1,095,000
기호(19)	84	72,000	6,048,000
기호(20)	53	72,000	3,816,000
합 계	11,753	-	2,677,267,000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m ²)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59	답	자연녹지지역	2,942	2,942	219,000	644,298,000	
2	동 소	465-1	유원지	자연녹지지역	2,079	1,479	230,000	340,170,000	개발행위 허가지1
						516	230,000	118,680,000	개발행위 허가지2
						84	76,000	6,384,000	개발행위 허가지1,2 도로예정지
3	동 소	465-2	답	자연녹지지역	60	60	183,000	10,980,000	
4	동 소	465-4	답	자연녹지지역	1,798	1,798	193,000	347,014,000	
5	동 소	465-5	유원지	자연녹지지역	251	251	230,000	57,730,000	개발행위 허가지1
6	동 소	465-6	유원지	자연녹지지역	338	338	230,000	77,740,000	개발행위 허가지1
7	동 소	466	유원지	자연녹지지역	1,350	1,344	230,000	309,120,000	개발행위 허가지2
						6	76,000	456,000	도로예정지
8	동 소	466-1	답	일반공업지역	608	608	306,000	186,048,000	개발행위 허가지2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m ²)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9	동 소	466-2	답	자연녹지지역	52	52	230,000	11,960,000	개발행위 허가지2
10	동 소	469-2	답	자연녹지지역	450	399	219,000	87,381,000	
						51	73,000	3,723,000	도로예정지
11	동 소	469-4	전	자연녹지지역	46	46	183,000	8,418,000	
12	동 소	469-5	답	자연녹지지역	179	179	203,000	36,337,000	
13	동 소	469-6	답	자연녹지지역	177	177	219,000	38,763,000	
14	동 소	469-7	도로	자연녹지지역	71	71	72,000	5,112,000	지목 및 현황 '도로'
15	동 소	470-1	대	자연녹지지역	591	591	410,000	242,310,000	
16	동 소	470-2	잡종지	자연녹지지역	265	210	266,000	55,860,000	
						55	88,000	4,840,000	도로예정지
17	동 소	470-3	도로	자연녹지지역	16	16	72,000	1,152,000	지목 및 현황 '도로'
18	동 소	470-4	답	자연녹지지역	343	328	219,000	71,832,000	
						15	73,000	1,095,000	도로예정지
19	동 소	470-5	도로	자연녹지지역	84	84	72,000	6,048,000	지목 및 현황 '도로'
20	동 소	470-6	도로	자연녹지지역	53	53	72,000	3,816,000	지목 및 현황 '도로'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m ²)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합 계			이	하	여	백	₩2,677,267,000.-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물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소재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전/답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임.

2. 교통 상황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황

기호(1)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2 일부,5,6)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개발행위허가부지'임.

기호(3)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4)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2 일부,7,8,9)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개발행위허가부지'임.

기호(10)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1)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12)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13)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4) : 본 건물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5)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임.

기호(16)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7) : 본 건물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8)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임.

기호(19) : 본 건물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20) : 본 건물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 건물은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2 일부,5,6) : 본 건물은 개발행위허가부지로서 북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3) : 본 건물은 북서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일부 접함.

기호(4) : 본 건물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2 일부,7,8,9) : 본 건물은 개발행위허가부지로서 북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10) : 본 건물은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1) : 본 건물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12) : 본 건물은 남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13) : 본 건물은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4) : 본 건물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5) : 본 건물은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6) : 본 건물은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7) : 본 건물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8) : 본 건물은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9) : 본 건물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20) : 본 건물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5.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2~6, 10~20) 공히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7,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8) :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6. 제시목록외의 물건

본 건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토지 기호(15) 지상 위 제시외물건 ㉠~㉡, 토지 기호(1) 지상 위 제시외물건㉢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임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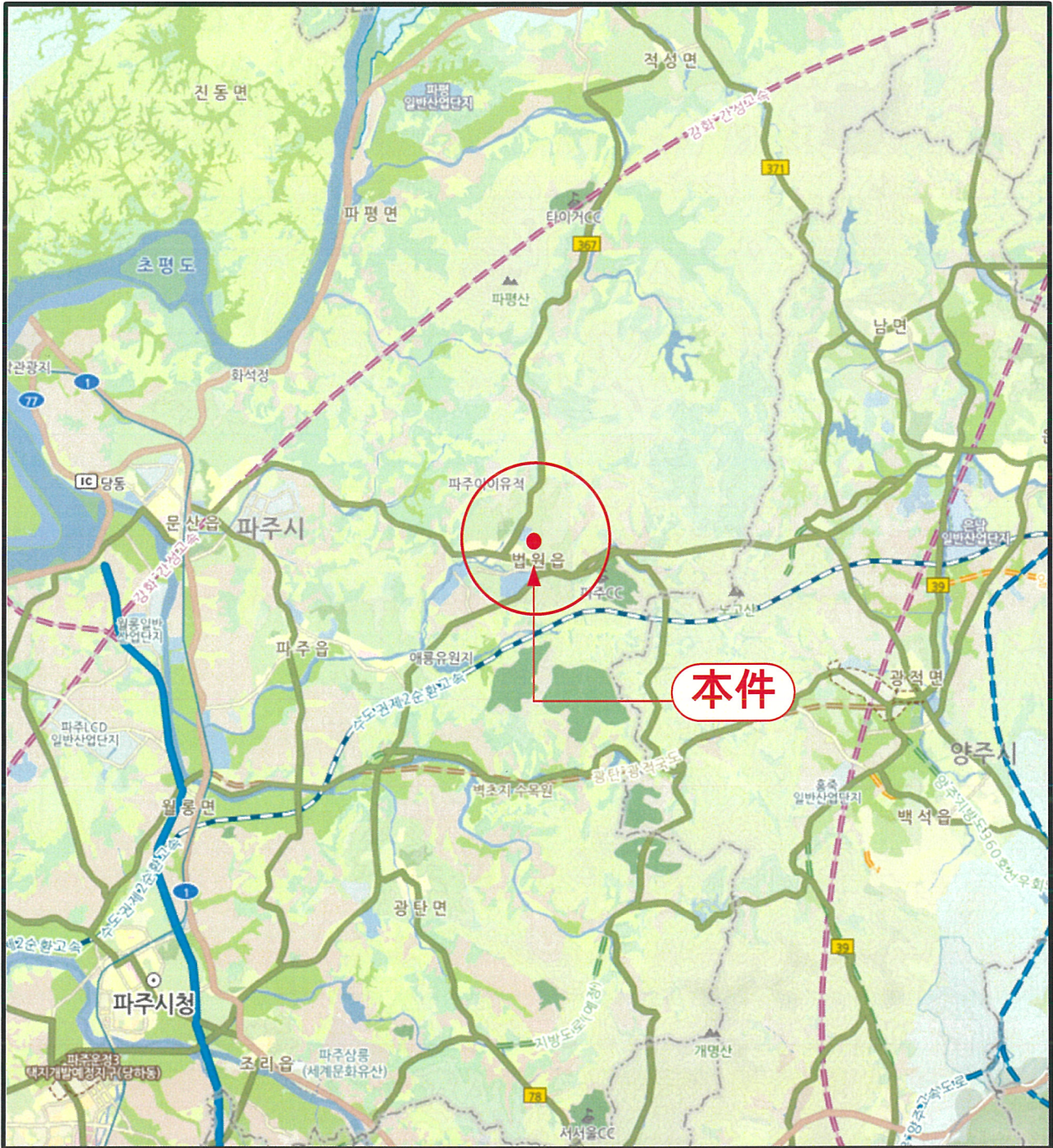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59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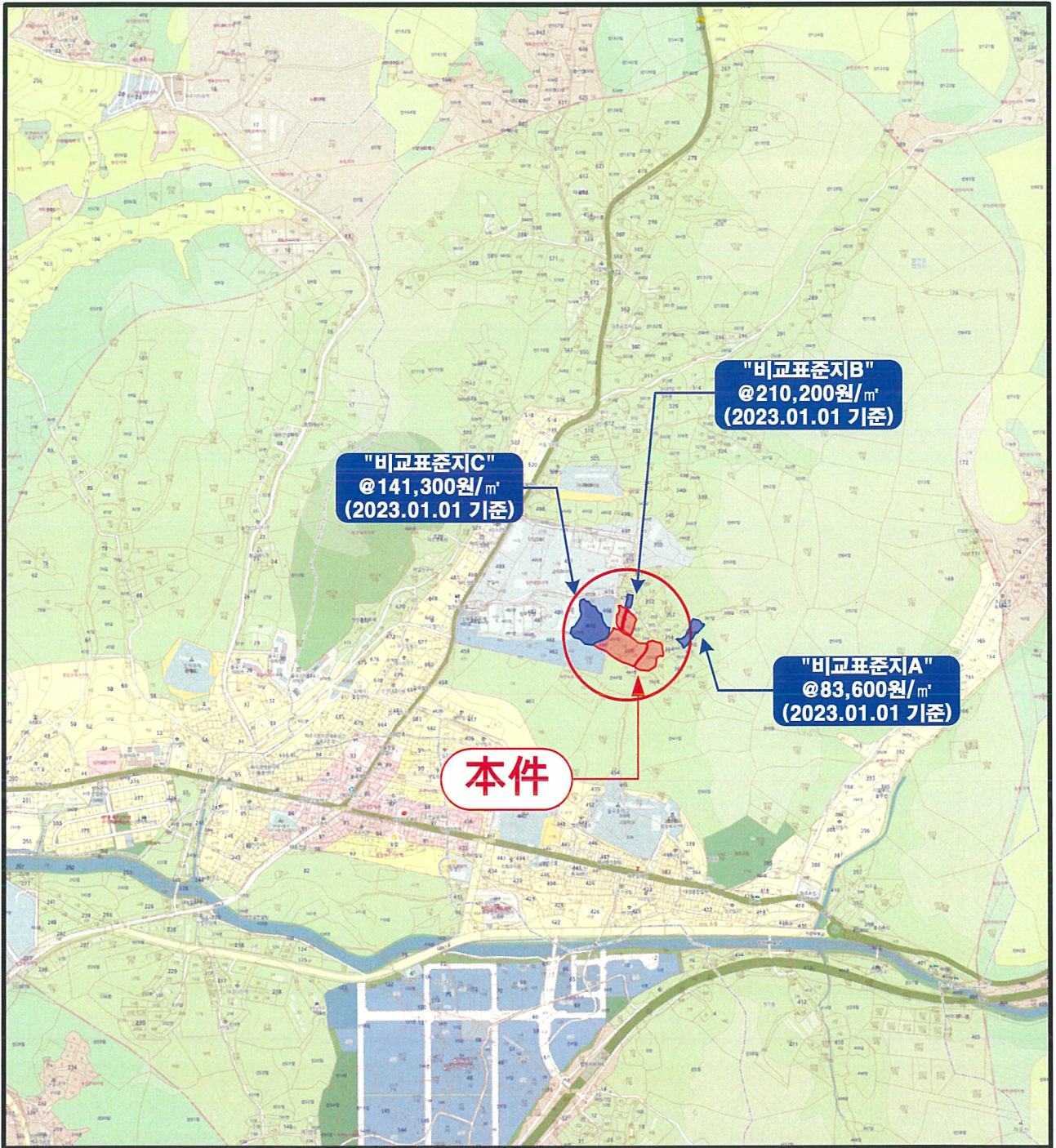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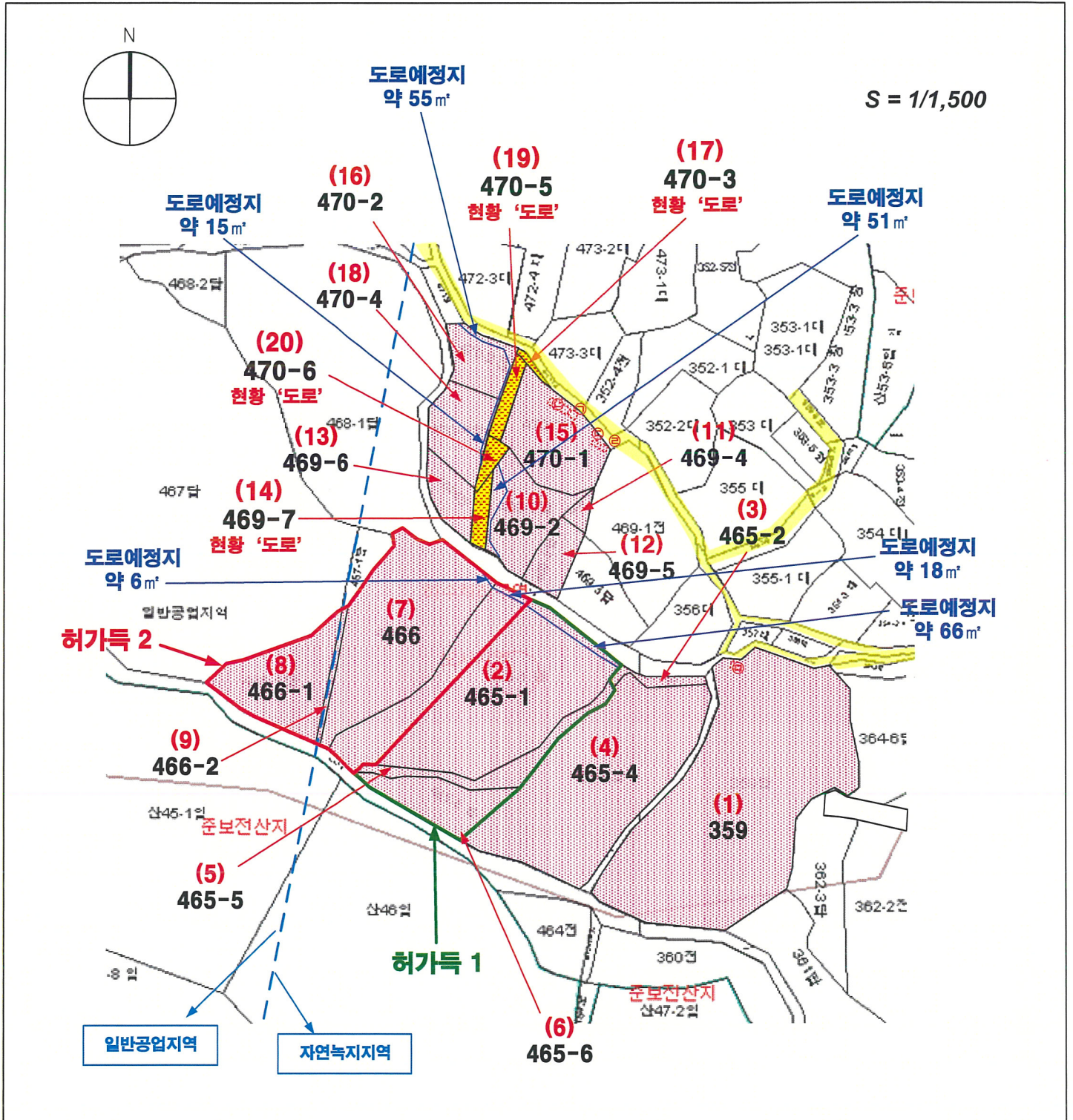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59 외



지적 및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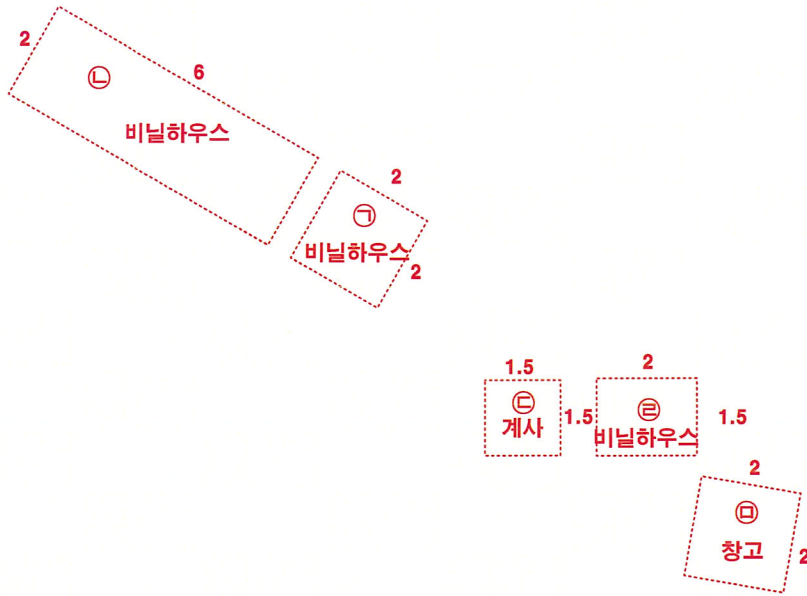


면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S = 1/150



제시외 건물

- ㉠ 파이프조 비닐지붕(비닐하우스) 약 4 m²
- ㉡ 파이프조 비닐지붕(비닐하우스) 약 12 m²
- ㉢ 목조 판넬지붕(계사) 약 2.25 m²
- ㉣ 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3 m²
- ㉤ 판넬조 판넬지붕(창고) 약 4 m²

현 황 사 진



【 본 건 전경 】



【 기호(1) 전경 】

현 황 사 진



【 기호(2,5,6) 전경 】



【 기호(4) 전경 】

현 황 사 진



【 기호(7) 전경 】



【 기호(8,9) 전경 】

현 황 사 진



【 기호(10,11,12) 전경 】



【 기호(13,20) 전경 】

현 황 사 진



【 기호(15) 전경 】



【 기호(16) 전경 】

현 황 사 진



【 기호(19) 전경 】



【 기호(20) 전경 】

현 황 사 진



【 제시외물건 ㉟ 】



【 제시외물건 ㉠ 】

현 황 사 진



【 제시외물건 ☹, ☹ 】



【 제시외물건 ☹ 】

현 황 사 진



【 제시외물건 ☹ 】



【 인접도로 및 주위환경 】

현 황 사 진



【 인접도로 및 주위환경 】



수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8계
(경유)

제목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 【2023타경6945 부동산임의경매】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타경694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 신 사 항 -

□ 2023. 10. 19. 개발행위가 기준시점 허가가 유효한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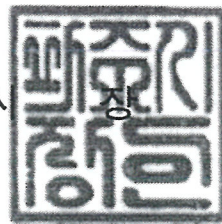
○ 위 사건 관련, 개발행위허가시 부여한 사업기간(2017.5.~2023.5.8)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의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준시점 현재(2023.10.19.) 개발행위허가가 유효함.

○ 허가번호 2017-227-3호, 2017-228-3호의 개발행위허가서 및 구적도 붙임 참조.

붙임 개발행위허가서 및 구적도 각 1부. 끝.



파 주 시



주무관	현재명	개발허가1팀	허가과장	전결 2024. 2. 21.
		장 이민우	정정희	

협조자

시행 허가1과-6166 (2024. 2. 21.) 접수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111 팩스번호 031-940-5859 / dawi2004@korea.kr / 비공개(6)

05369



파 주 시



수신 이상준 귀하 (우0286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길 29, 4층 (삼선동2가))
(경유)

제목 개발행위(변경) 허가 알림 **【균형발전 제2017-228-2호, 이○준】** (법원읍, 농지)

1. 파주시 지역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147705(2022. 4. 29.)호로 제출한 개발행위(변경)허가 민원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허가하오니, 그에 따른 각종 공과금을 납부(30일 내)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허가조건 및 설계도서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이행보증금(또는 복구비)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될 수 있으니,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 허가증을 수령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허가증 수령 전에 사전 불법 착공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허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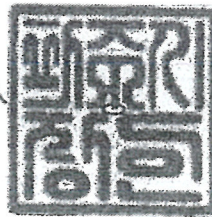
승허가자	허가지	지목	허가면적	목적	허가기간
이상준	법원읍 법원리 465-1, -5, -6, 469-2, 470-2, -4	원, 답, 장	2,255㎡ (도로 187)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부지조성	2017. 5. ~ 2023. 5. 8.
기타	- 허가기간 연장				

나. 공과금내역

구분	공과금명	관련법령	금액(원)	비고
개발 행위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35조	18,000	고지서 납부 (납세지원과 취득세신고팀: 940-2915)
	이행보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26,926,000	보증보험증권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보증보험기간은사업기간 만료일에 8개월 가산)
	지역개발공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7조	3,380,000	㎡당 1,500원

붙임 개발행위 허가필증 1부. 끝.

파 주 시



주무관 김재준 개발2팀장 차병호 지역발전과장 2022. 5. 9. 한경준

협조자

시행 지역발전과-9599 (2022. 5. 9.) 접수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126 팩스번호 031-940-5369 / tjch1068@korea.kr / 비공개(5,6)

개발행위(변경)허가필증

허가번호 : 균형발전 제2017-228-3호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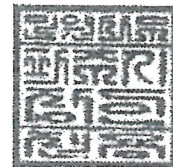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이 상 준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651010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길 29			
신청지	법원읍 법원리 465-1, -5, -6, 469-2, 470-2, -4				
공부상면적	3,726	허가면적	2,255㎡(도로 187)	지 목	원, 담, 전
목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부지조성				
허가기간	2017. 5. ~ 2023. 5. 8.				
기 타	허가기간 연장				

※ 허가조건 : 불임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필증을 교부합니다.

2022 년 05 월 09 일

파 주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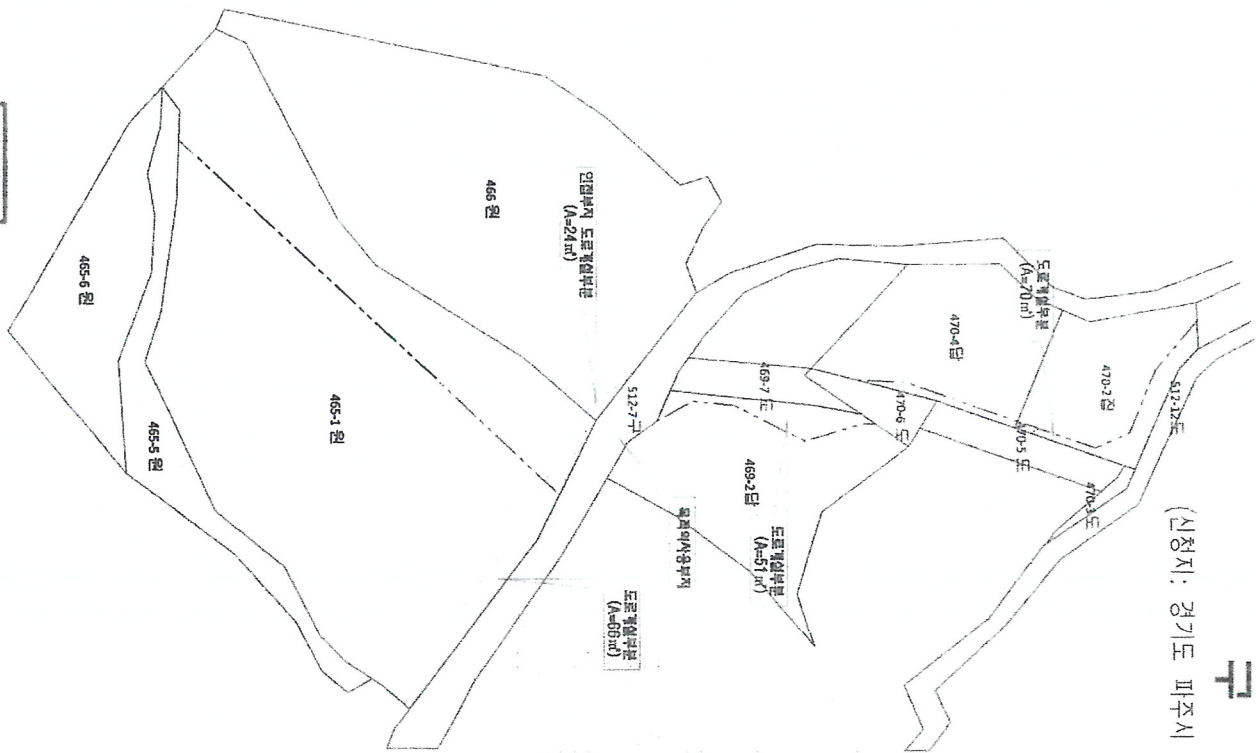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발

구 적 도

(신청지: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465-1번지 외 5필지)

SCALE=1:600



토지면적조사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상면적			소유자	지번부지	일반공업	농지진흥면적
			대지면적	도로면적	제외면적				
465-1	원	2,079	1,479	66	534	조성태 이상준	1,545	0	
465-5	원	251	251	0	0	조성태 이상준	251	0	
465-6	원	338	338	0	0	조성태 이상준	338	0	
469-2	답	450	0	51	399	조성태 이상준	51	0	
470-4	답	343	0	15	328	조성태 이상준	15	0	
470-2	답	265	0	55	210	조성태 이상준	55	15	
합계		3,726	2,068	187	1,471		2,255	0	

◎ 지적은 토지 대장상의 면적과 동일.

◎ 면적산출은 AUTOCAD에 의함.

※ 지적면적, 조지, 면적은 국토지리정보원(KGSI)의 지적도상 면적에 의함.

(단위: m²)



원진측량설계공회
KGS
국립지리정보원
국립지리정보원
국립지리정보원



공시명
주소
도면명

작성일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고급
수원관

작성일자

작성일자

작성일자

작성일자

개발행위허가조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규정에 의거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됩니다.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보증금(또는 복구비)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개발행위 허가기간 종료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고
 - 명의, 용도변경 등 각종 변경허가는 최초 허가 잔여기간만 허가기간으로 부여됩니다.

□ 개발행위허가 조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며, 용도 변경 시 해당용도 및 규모에 맞는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 절차(심의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개발행위는 허가서의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없이 선 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40조, 제142조 규정에 따라 처분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수허가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합니다.
- 부지조성으로 인한 인접지 피해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인접지 피해 시 원상복구 명령 및 허가취소 대상)
- 공사 착수 전 이해관계인(인근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공인기관에 의한 경계측량 실시 후 준공 시까지 보존하여 허가지 외의 토지를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옹벽 구축 시 지하 기초 부분을 포함한 옹벽의 경계침범 분쟁을 예방하고, 옹벽배수공을 통한 유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사유지와 경계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옹벽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 토지경계의 분쟁 및 공사 시 주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수허가자의 책임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합니다.(민·형사상 포함)

- 경계측량 후 인접지의 주거 피해방지를 위해 EGI 휨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기 시 인접지의 수해 및 우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배수관을 최종 방류구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 따라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준공 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수계획은 주변 유역면적에 의한 배수량 및 배수단면을 결정하여야 하고 우수가 배출되는 연결 배수관 단면이 부족할 시에는 배수관을 추가로 매설하는 등 배수계획을 수립, 시공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시에는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이 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시 공사차량 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사안내 표지판을 비롯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폐불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절·성토사면에 대한 기울기는 다음표에 의하여 안정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사 면 기 율 기
암 석 지	1:0.3~ 1. 2
토 사 지 역	1:1.2 ~1. 5 / 성토사면 1.5이상
경 압	1:0.3 ~ 0.8
연 압	1:0.5 ~ 1.2

-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합니다.
-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합니다.
- 절·성토 사면의 높이가 10m 이상이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사면안정성 검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안정성 검토 판단 후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구조물(옹벽, 보강토 등) 시공 시에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실시공 발생 시에는 즉시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의 사면 및 비탈면에는 가급적 옹벽(L형옹벽, 역T형옹벽 등)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강토 옹벽을 설치할 시에는 기초콘크리트, 그리드 설치, 로올러 다짐 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준공 신청 시에는 전·중·후 사진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옹벽구조물 동일)
- 법면은 산사태 및 집중강우 시 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허가취소나 변경 시에는 기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기타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위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률 제140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내 진출입도로는 설계도면 상에 정해진 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고 개발행위 준공신청은 모든 기반시설(도로, 하수도, 오수, 구조물, 울타리, 건축물, 조경 등)이 완료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다른 법령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진입도로 확폭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거 실제 차량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그 폭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계획도로(진입도로) 확보계획으로 조건부 허가(협의)된 사항은 진입도로 확보 및 개설(준공) 후 준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황도로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허가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허가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장조치 조건】

- 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시 시공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도로포장 시는 배수형단관, 종배수관 등 현장조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굴착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보조기층을 20cm 이상 부설 및 다짐을 한 후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으로 포장 하여야 합니다.
- 진입도로는 급경사지로 직각 선형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통행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변환경(지형, 지물, 경관)을 고려하여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횡단구성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완화된 도로선형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 진입도로의 경사도는 주거지역(단독주택부지)일 경우 10%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일부구간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14% 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배수관은 최종방류구에 연결하되 「하수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타인 소유의 하수관 또는 배수시설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 동의를 득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전 배수설비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사용승락을 득하여야 함.)
- 진입도로 상에는 종배수관을 매설하고 집수정(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형 단 물끊기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여 배수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플룸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 단지 내로 진출입하는 덤프, 레미콘 차량 및 기타 중장비 운행 시는 서행하여야 하며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시설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5m 이상의 옹벽 및 보강토 설치 시에는 사전 관련기술사 및 시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서 검토 및 시공자문을 받은 후 구조안전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여건상 절·성토 시 위험 징후가 있을 시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기술안전 진단을 받아야 함.)
- 보강토의 기초터파기는 원지반이 90%이상 다짐밀도가 되도록 램머, 소형다짐기, 로울러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방지를 위해 유공관 부설 후 잡석기초의 경우 최소두께는 20cm이상, 콘크리트 기초 두께 30cm이상으로 수평이 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합니다.(연약지반일 경우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별도의 시공계획 수립 시행)

- 보강토 블록의 첫단은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평과 선형이 잘 맞는 지 확인하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블록의 전단키(턱)가 상단블록의 전면흙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보강토 그리드는 3단 쌓기 후 1회씩 설치하여야 하고 롤(Roll)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단블록의 전단키에 의해 당겨지는 것을 감안하여 전면부 쪽으로 여유 폭을 두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 시 참고의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장하오며, 준공검사 신청 시 시공결과에 대한 증빙서류(사진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협의조건

관련부서	관련법령	가능여부	심 의 내 용
도시개발과	경관법	조건부 가	건축인허가시 경관 협의 득하여야 함
친수하천과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조건부 가	의견없음
도로관리과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조건부 가	기 협의의견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수도과	수도법	조건부 가	의견없음
상수도과	지하수법	조건부 가	지하수 개발·이용시 지하수법 제7조 또는 8조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함. 지하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발지역 내 굴착시설(지하수이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굴착시설 현황 등은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하수도과	하수도법	조건부 가	[오수관리팀] - 건축 인허가시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성장관리방안도로 및 도시계획도로포함)	조건부 가	기 협의사항 준수
건설과	도로법	조건부 가	(도로건설팀)의견없음

관련부서	관련법령	가능여부	심 의 내 용
건축과	건축법(건축허가-금촌동, 문산읍,조리읍, 법원읍,월릉면, 탄현면,장단면)	해당없음	○ 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조립식건축물 지양) 건축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조치(계획서 제출 및 공작물 축조신고)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허가 전 도로부분은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착공전까지 개설 완료하는 조건이며,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 후 건축사용승인 신청 시 주차장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영 제80조의2, 파주시 건축조례 제28조 관련 [별표 3]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함
친수하천과	하천법	조건부 가	해당없음
평화협력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조건부 가	행정위탁지역으로 위임범위를 충족하므로 개발행위 허가 가능함
산림농지과	농지법	가	기 협의조건 준수할 것
건설과	도로법	조건부 가	의견없음

□ 공사 완료 후 이행사항

○ 공사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공사가 완료된 현황측량도

(건축물, 옹벽구조물, 담장, 포장된 도로 등)

- 준공사진 (부지 내 공사용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및 폐자재 등 완전철거)

※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하여 제출(같은 방향에서 촬영)

특히, 옹벽 및 보강토 구조물의 주요 공정별 시공 과정 사진 제출

- 상수도(급수준공필증) 또는 지하수 준공필증(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배수설비준공필증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 해당 부서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이행보증금(토지형질복구예치금)이 현금일 경우 반환에 필요한 서류

□ 허가증 수령 전

<개발행위>

- 「지방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협의)에 따른 등록면허세 ₩18,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이행보증금 26,926,000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협의)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3,38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 1,500원)
(※ 신고증 수령 전 채권매입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 예치 시 허가기간 만료일에 8개월을 가산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준공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준공 후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신청 시에는 납입영수증 원본과 통장사본 및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에서의 이행보증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지복구비가 클 경우 산지복구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지복구비가 작을 경우는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의 차액만큼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허가를 받으신 경우, 추후 변경 사유 발생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변경)허가 신청 시점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

(단, 배수시설 설치 대상지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없을 경우는 제외)

※ 따라서, 허가를 받으신 후 우선적으로 배수시설 설치 시공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대 상】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 개인 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공사

【신고방법】

-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
-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황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

- 단순 산림의 형질변경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건축을 하는 경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공부상 지목변경의 경우, 위 사항과 비교하여 빠른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문의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031-940-2915)】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안내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 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승계 또는 토지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위 승계자 또는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 ※ 개발부담금은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개발부담금 문의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 031-940-4974)】

【참고 :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

구 분	체크 리스트	반영여부
보행공간	▶ 유효폭 1.2미터 이상 확보	
보행공간	▶ 보행로가 시설물이나 차량진입로 등으로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 유지	
보행공간	▶ 내부 보행동선에 유도시설(블라드,바닥페인팅 등)	
보행공간	▶ 내부 보행 동선에 단차 제거	
외부 접근로	▶ 접근로의 기울기 18분의 1(5.5%) 이하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8%)까지 완화	
건물 출입구	▶ 건축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턱 낮추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준용

※ 유의사항

○ 배수시설 설치 시공 안내

-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허가를 받으신 경우,
추후 변경 사유 발생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변경)허가 신청 시점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
(단, 배수시설 설치 대상지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없을 경우는 제외)
- 따라서, 허가를 받으신 후 우선적으로 배수시설 설치 시공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파 주 시



수신 조성태 귀하 (우1049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 (행신동, 햇빛마을18단지아파트))
(경유)

제목 개발행위(변경) 허가 알림 【균형발전 제2017-227-3호, 조〇태】 (법원읍-농지)

1. 파주시 지역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147704(2022. 4. 29.)호로 제출한 개발행위(변경)허가 민원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허가하오니, 그에 따른 각종 공과금을 납부(30일 내)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허가조건 및 설계도서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이행보증금(또는 복구비)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될 수 있으니,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 허가증을 수령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허가증 수령 전에 사전 불법 착공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허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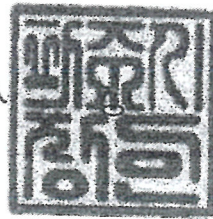
수허가자	허가지	지목	허가면적	목적	허가기간
조성태	법원읍 법원리 466, -1, -2, 465-1	답, 원	2,544㎡ (도로 2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부지조성	2017. 5. ~ 2023. 5. 8.
기 타	- 허가기간 연장, 지적면적 표기오류 정정 (증45㎡)				

나. 공과금내역

구 분	공과금명	관련법령	금액(원)	비 고
개발 행위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35조	18,000	고지서 납부 (납세지원과 취득세신고팀: 940-2915)
	이행보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27,150,000	보증보험증권 또는 세입세출의현금으로 예치 (보증보험기간은 사업기간 만료일에 8개월 가산)
	지역개발공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7조	3,816,000	㎡당 1,500원

붙임 개발행위 허가필증 1부. 끝.

파 주 시



주무관 김재준 개발2팀장 차병호 지역발전과장 전결 2022. 5. 9.
협조자 한경준

시행 지역발전과-9594 (2022. 5. 9.) 접수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126 팩스번호 031-940-5369 / tjch1068@korea.kr / 비공개(5,6)

개발행위(변경)허가필증

허가번호 : 균형발전 제2017-227-3호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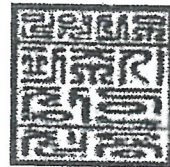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조성태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691128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왕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행신동, 햇빛마을)			
신청지	법원읍 법원리 466, -1, -2, 465-1				
공부상면적	4,089	허가면적	2,544㎡(도로 24)	지목	원, 답
목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부지조성				
허가기간	2017. 5. ~ 2023. 5. 8.				
기타	허가기간 연장, 지적면적 표기오류 정정(증45㎡)				

※ 허가조건 : 불임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필증을 교부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파주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발

구적도 및 개요,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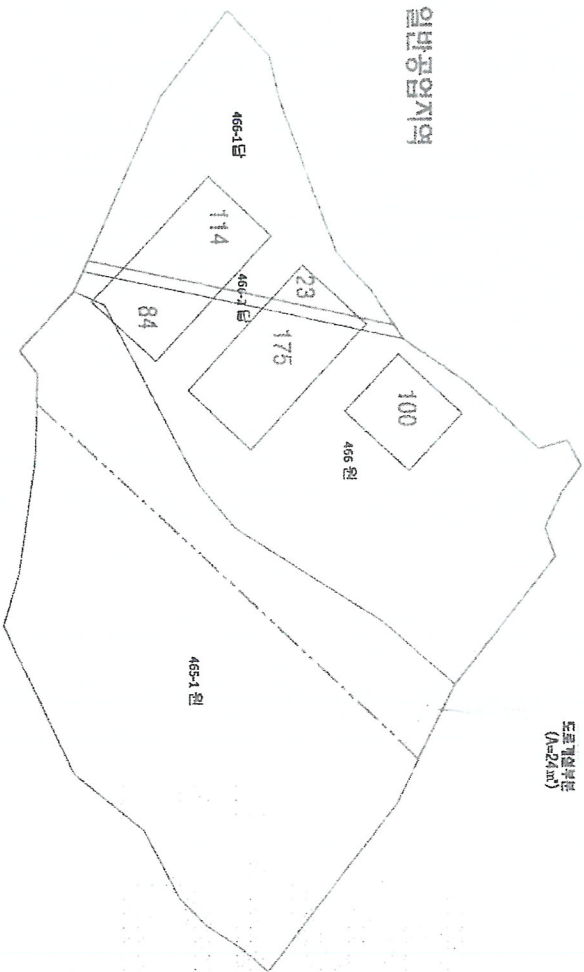
(신청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6번지 외 3필지)

SCALE=1:600

자연녹지지역

도로점선부분
(A=20.0m)

일반공업지역



토지면적조사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자연녹지	일반공업	농지전용면적
			대지면적	도로면적					
466	원	1,350	1,344	6	0	조성태 이상준	1,350	0	0
466-1	답	608	608	0	0	조성태 이상준	0	608	608
466-2	답	52	52	0	0	조성태 이상준	52	0	52
465-1	원	2,079	516	18	1,545	조성태 이상준	534	0	0
합계		4,089	2,520	24	1,545		1,891	608	660
			2,544						

◎ 지적은 토지 대장상의 면적과 동일.
◎ 면적산출은 AUTOCAD에 의함.
1. 지적면적 산출시 면적에 기존 지적면적 반영도 있음.

(단위 : m²)

동(층)별 면적 개요

동(층) 구분	면적 (m ²)	용도
1동	지상 1층 300.0m ²	제2종근린생활시설(계조입)
2동	지상 1층 198.0m ²	제2종근린생활시설(계조입)
3동	지상 1층 188.0m ²	제2종근린생활시설(계조입)
계	486.0m ²	

건축 개요

구분	설계내역
영향	법원리 제2종근린생활시설(계조입) 신축공사
대지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6번지 외 3필지 2,520.0m ²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486.0m ² (일반공업-137m ² , 자연녹지-349m ²)
건폐율	137.0m ² / 608.0m ² X 100 = 22.53%, 349.0m ² / 1,912.0m ² X 100 = 18.25%
용적률	137.0m ² / 608.0m ² X 100 = 22.53%, 349.0m ² / 1,912.0m ² X 100 = 18.25%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계조입)
주차개요	법원 - 근린생활지역 100m ² 당 1대 486.0m ² / 100 = 4.86 < 5대



원진총량설계환경건축사
주최: (주) 원진총량
주소: (주) 원진총량
전화: (주) 원진총량
팩스: (주) 원진총량
www: (주) 원진총량

작성일자: 2024.02.21
작성처: 원진총량
축량 및 지형공간정보 고급 유원찬
건축사: 원진총량
도면번호: 원진총량
도면일련번호: 원진총량

개발행위허가조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규정에 의거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됩니다.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보증금(또는 복구비)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개발행위 허가기간 종료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고
 - 명의, 용도변경 등 각종 변경허가는 최초 허가 잔여기간만 허가기간으로 부여됩니다.

□ 개발행위허가 조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며, 용도 변경 시 해당용도 및 규모에 맞는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 절차(심의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개발행위는 허가서의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없이 선 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40조, 제142조 규정에 따라 처분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수허가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합니다.
- 부지조성으로 인한 인접지 피해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인접지 피해 시 원상복구 명령 및 허가취소 대상)
- 공사 착수 전 이해관계인(인근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공인기관에 의한 경계측량 실시 후 준공 시까지 보존하여 허가지 외의 토지를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옹벽 구축 시 지하 기초 부분을 포함한 옹벽의 경계침범 분쟁을 예방하고, 옹벽배수공을 통한 유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사유지와 경계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옹벽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 토지경계의 분쟁 및 공사 시 주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수허가자의 책임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합니다.(민·형사상 포함)

- 경계측량 후 인접지의 주거 피해방지를 위해 EGI 헨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기 시 인접지의 수해 및 우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배수관을 최종 방류구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에 따라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준공 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수계획은 주변 유역면적에 의한 배수량 및 배수단면을 결정하여야 하고 우수가 배출되는 연결 배수관 단면이 부족할 시에는 배수관을 추가로 매설하는 등 배수계획을 수립, 시공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시에는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이 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시 공사차량 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사안내 표지판을 비롯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상단면과 접촉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절·성토사면에 대한 기울기는 다음표에 의하여 안정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사 면 기 울 기
암 석 지	1:0.3~ 1. 2
토 사 지 역	1:1.2 ~1. 5 / 성토사면 1.5이상
경 압	1:0.3 ~ 0.8
연 압	1:0.5 ~ 1.2

-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합니다.
-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합니다.
- 절·성토 사면의 높이가 10m 이상이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사면안정성 검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안정성 검토 판단 후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구조물(옹벽, 보강토 등) 시공 시에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설시공 발생 시에는 즉시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의 사면 및 비탈면에는 가급적 옹벽(L형옹벽, 역T형옹벽 등)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강토 옹벽을 설치할 시에는 기초콘크리트, 그리드 설치, 로울러 다짐 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준공 신청 시에는 전·중·후 사진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옹벽구조물 동일)
- 법면은 산사태 및 집중강우 시 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허가취소나 변경 시에는 기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기타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 위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률 제140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내 진출입도로는 설계도면 상에 정해진 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고 개발행위 준공신청은 모든 기반시설(도로, 하수도, 오수, 구조물, 울타리, 건축물, 조경 등)이 완료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다른 법령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진입도로 확폭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거 실제 차량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그 폭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계획도로(진입도로) 확보계획으로 조건부 허가(협의)된 사항은 진입도로 확보 및 개설(준공) 후 준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황도로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허가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허가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장조치 조건】

- 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시 시공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도로포장 시는 배수횡단관, 종배수관 등 현장조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굴착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보조기층을 20cm 이상 부설 및 다짐을 한 후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으로 포장 하여야 합니다.
- 진입도로는 급경사지로 직각 선형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통행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변환경(지형, 지물, 경관)을 고려하여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횡단구성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완화된 도로선형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 진입도로의 경사도는 주거지역(단독주택부지)일 경우 10%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일부구간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14% 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배수관은 최종방류구에 연결하되 「하수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타인 소유의 하수관 또는 배수시설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 동의를 득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전 배수설비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사용승락을 득하여야 함.)
- 진입도로 상에는 종배수관을 매설하고 집수정(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횡단 물끊기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여 배수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플룸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 단지 내로 진출입하는 덤프, 레미콘 차량 및 기타 중장비 운행 시는 서행하여야 하며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시설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5m 이상의 옹벽 및 보강토 설치 시에는 사전 관련기술사 및 시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서 검토 및 시공사문을 받은 후 구조안전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여건상 절·성토 시 위험 징후가 있을 시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기술안전 진단을 받아야 함.)
- 보강토의 기초터파기는 원지반이 90%이상 다짐밀도가 되도록 램머, 소형다짐기, 로울러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방지를 위해 유공관 부설 후 잡석기초의 경우 최소두께는 20cm이상, 콘크리트 기초 두께 30cm이상으로 수평이 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합니다.(연약지반일 경우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별도의 시공계획 수립 시행)

- 보강토 블록의 첫단은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평과 선형이 잘 맞는 지 확인하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블록의 전단키(턱)가 상단블록의 전면흙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보강토 그리드는 3단 쌓기 후 1회씩 설치하여야 하고 롤(Roll)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단블록의 전단키에 의해 당겨지는 것을 감안하여 전면부 쪽으로 여유 폭을 두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 시 참고의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장하오며, 준공검사 신청 시 시공결과에 대한 증빙서류(사진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협의조건

관련부서	관련법령	가능여부	심 의 내 용
도시개발과	경관법	조건부 가	건축인가시 경관 협의 득하여야 함
친수하천과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조건부 가	의견없음
도로관리과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조건부 가	기협의의견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수도법	조건부 가	의견없음
상수도과	지하수법	조건부 가	지하수 개발·이용시 지하수법 제7조 또는 8조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함. 지하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발지역 내 굴착시설(지하수이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굴착시설 현황 등은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하수도과	하수도법	조건부 가	[오수관리팀] - 건축 인허가시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성장관리방안도로 및 도시계획도로포함)	조건부 가	- 용도지역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입지가능함.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적합해야 하며, 공장 등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수반될 경우 반드시 재협의 할 것.
건설과	도로법	조건부 가	(도로건설팀)의견없음

관련부서	관련법령	가능여부	심 의 내 용
건축과	건축법(건축허가-금촌동, 문산읍,조리읍, 법원읍,월통면, 탄현면,장단면)	해당없음	○ 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조립식건축물 지양) 건축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조치(계획서 제출 및 공작물 축조신고)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허가 전 도로부분은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착공전까지 개설 완료하는 조건이며,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 후 건축사용승인 신청 시 주차장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영 제80조의2, 파주시 건축조례 제28조 관련 [별표 3]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함
천수하천과	하천법	조건부 가	해당없음
평화협력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조건부 가	행정위탁지역으로 위임범위를 충족하므로 개발행위허가 가능함
산림농지과	농지법	가	기 협의조건 준수할 것
건설과	도로법	조건부 가	의견없음

□ 공사 완료 후 이행사항

○ 공사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공사가 완료된 현황측량도

(건축물, 옹벽구조물, 담장, 포장된 도로 등)

- 준공사진 (부지 내 공사용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및 폐자재 등 완전철거)

※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하여 제출(같은 방향에서 촬영)

특히, 옹벽 및 보강토 구조물의 주요 공정별 시공 과정 사진 제출 必

- 상수도(급수준공필증) 또는 지하수 준공필증(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배수설비준공필증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 해당 부서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이행보증금(토지형질복구예치금)이 현금일 경우 반환에 필요한 서류

□ 허가증 수령 전

<개발행위>

- 「지방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협의)에 따른 등록면허세 ₩18,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이행보증금 27,150,000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협의)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3,816,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 1,500원)
(※ 신고증 수령 전 채권매입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 예치 시 허가기간 만료일에 8개월을 가산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준공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준공 후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신청 시에는 납입영수증 원본과 통장사본 및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에서의 이행보증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지복구비가 클 경우 산지복구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지복구비가 작을 경우는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의 차액만큼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허가를 받으신 경우, 추후 변경 사유 발생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변경)허가 신청 시점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

(단, 배수시설 설치 대상지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없을 경우는 제외)

※ 따라서, 허가를 받으신 후 우선적으로 배수시설 설치 시공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대 상】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 개인 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공사

【신고방법】

-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
-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황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

- 단순 산림의 형질변경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건축을 하는 경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공부상 지목변경의 경우, 위 사항과 비교하여 빠른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문의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031-940-2915)】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안내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 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승계 또는 토지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위 승계자 또는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 ※ 개발부담금은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개발부담금 문의 파주시청 토지정보과 (☎ 031-940-4974)】

【참고 :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

구 분	체크 리스트	반영여부
보행공간	▶ 유효폭 1.2미터 이상 확보	
보행공간	▶ 보행로가 시설물이나 차량진입로 등으로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 유지	
보행공간	▶ 내부 보행동선에 유도시설(블라드,바닥페인팅 등)	
보행공간	▶ 내부 보행 동선에 단차 제거	
외부 접근로	▶ 접근로의 기울기 18분의 1(5.5%) 이하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8%)까지 완화	
건물 출입구	▶ 건축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턱 낮추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준용

※ 유의사항

○ 배수시설 설치 시공 안내

-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허가를 받으신 경우,
추후 변경 사유 발생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변경)허가 신청 시점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
(단, 배수시설 설치 대상지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없을 경우는 제외)
- 따라서, 허가를 받으신 후 우선적으로 배수시설 설치 시공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406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59	2,942.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정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권장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녹지지역 하수처리구역 행정동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03/ 25</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경 기 도 파 주 시 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div>					축척 1/1500 수입증지 붙이는곳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수 수 료 전 자 결 제 민 원 </div>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709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5-1	
				지목	유원지	
				면적(m ²)	2,079.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족사용제한구역(전부제한)<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3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p>판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역 준보전산지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향수정원구역 향정원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03/ 25</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도 파주시장</p>						
				<p>수수료 전자결제 민원</p>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100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5-2	60.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족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입(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선행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 문화관광지 자연녹지지역 취수제한구역 법정동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03/ 25</p> <p style="text-align: center;">경 기 도 파 주 시 장</p>					<p>측척 1/1000</p> <p>수입증지 붙이는곳</p> <p>수수료 전자결제 민원</p>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660

발행대수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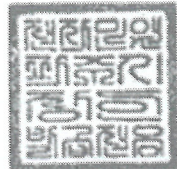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과천시 법원읍 법원리		465-4	답	1,798.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 일반전산지 일반농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하수처리구역 농장류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03/ 25</p> <p style="text-align: center;">경 기 도 과 주 시 장</p>						<p>축척 1/1500</p> <p>수입증지 붙이는곳</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수 수 료</p> <p>전 자 결 제</p> <p>민 원</p>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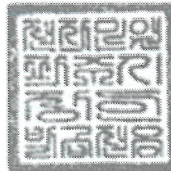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640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5-5	유원지	251.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육구역(선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도시지역 준보전산지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하수처리구역 행정동
					축척 1/1500 수입증지 붙이는곳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03/ 25 경기도 파주시장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324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5-6	
				지목	유원지	
				면적(m ²)	338.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동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3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동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도시지역 준보전산지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하수처리구역 방장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03/ 25 경기도 파주시장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076

발행대수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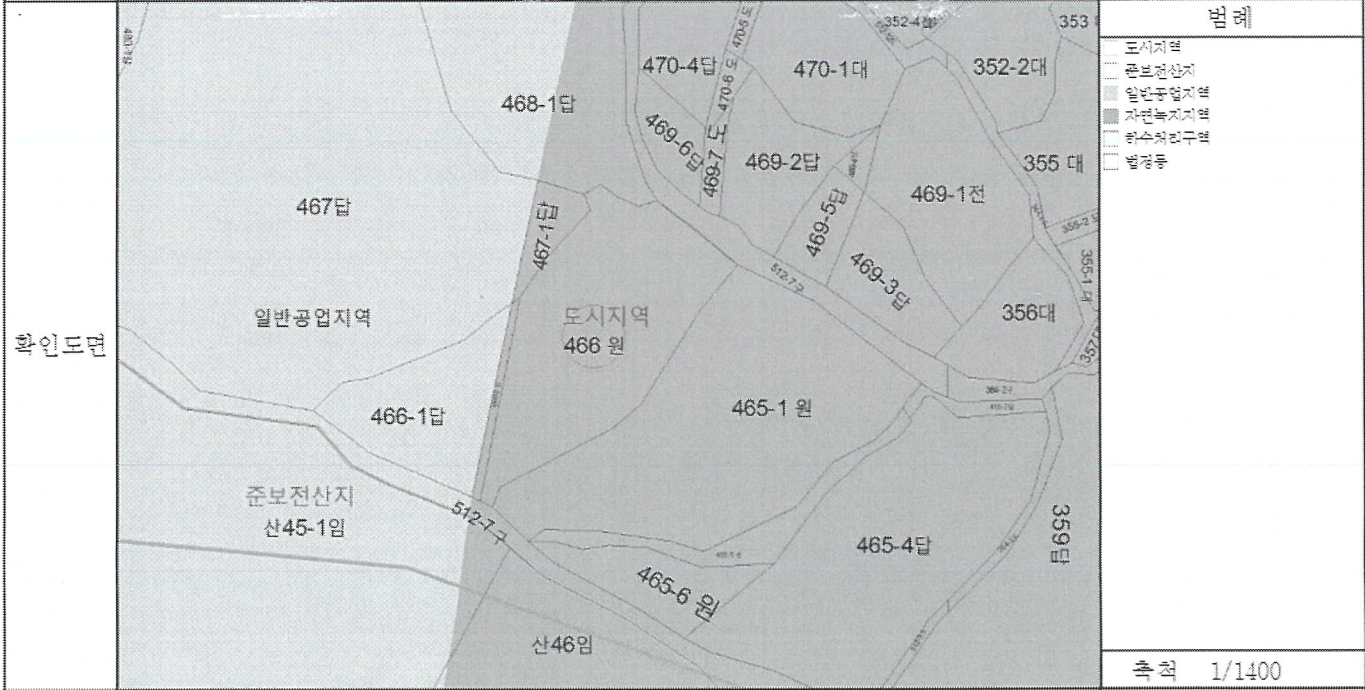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6	유원지	1,350.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족사용제한구역(전부제한)<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선평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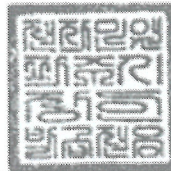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03/ 25

경기도 파주시장

수입증지 붙이는곳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301

발행대수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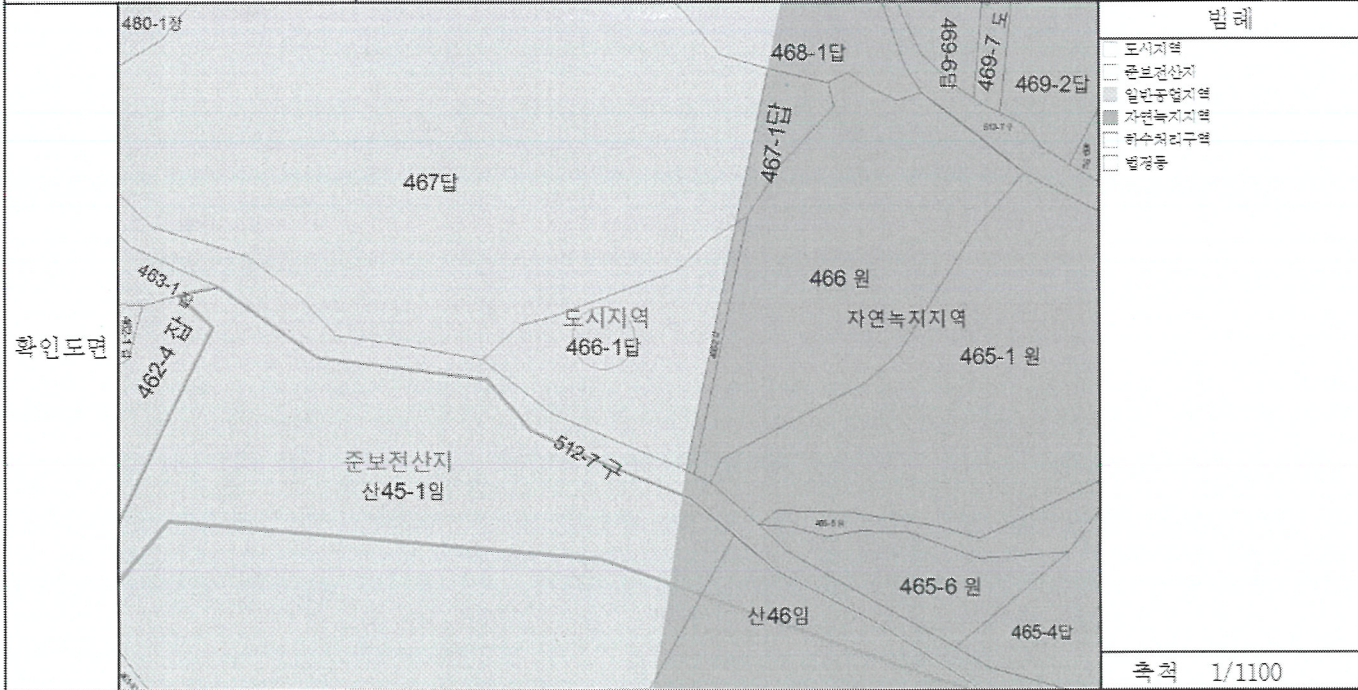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6-1	답	608.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일반공업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족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6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03/ 25

경기도 파주시장

수입증지 붙이는곳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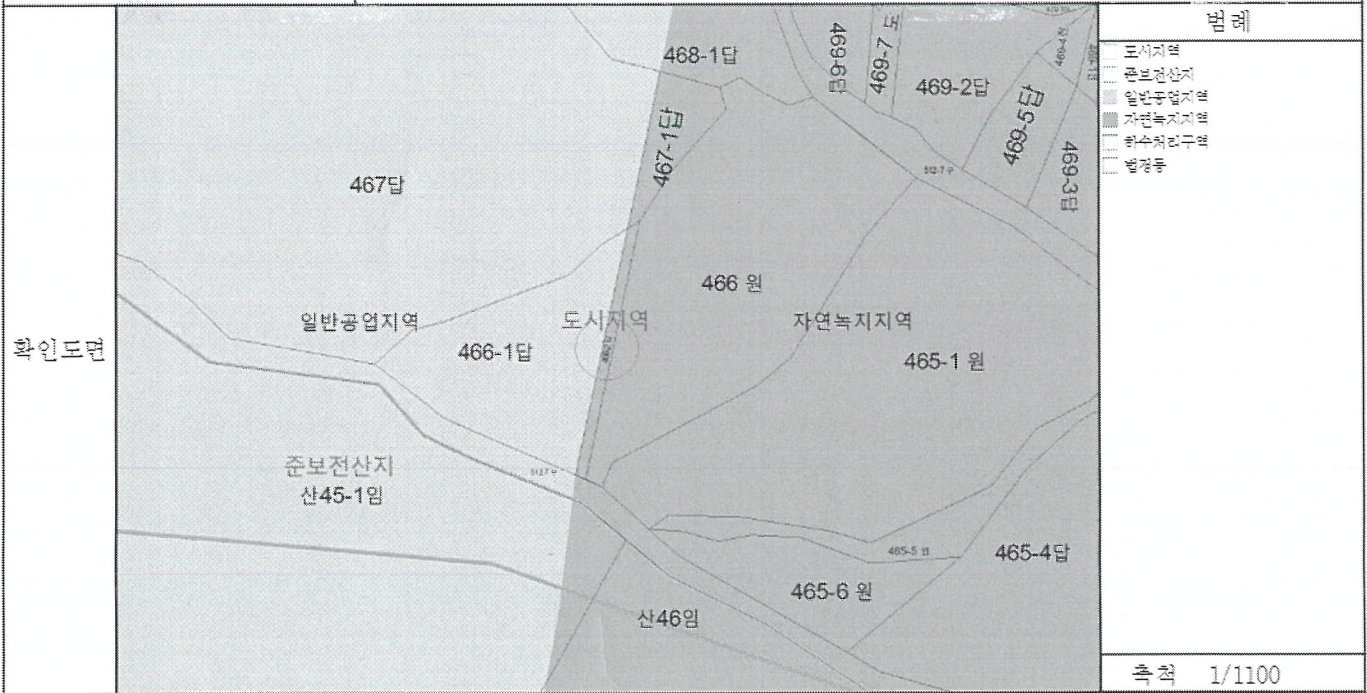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6-2	답	52.0
지역·지구분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분	기층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기층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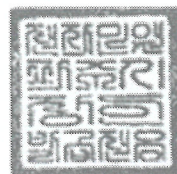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03/ 25

경기도 파주시장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269

발행대수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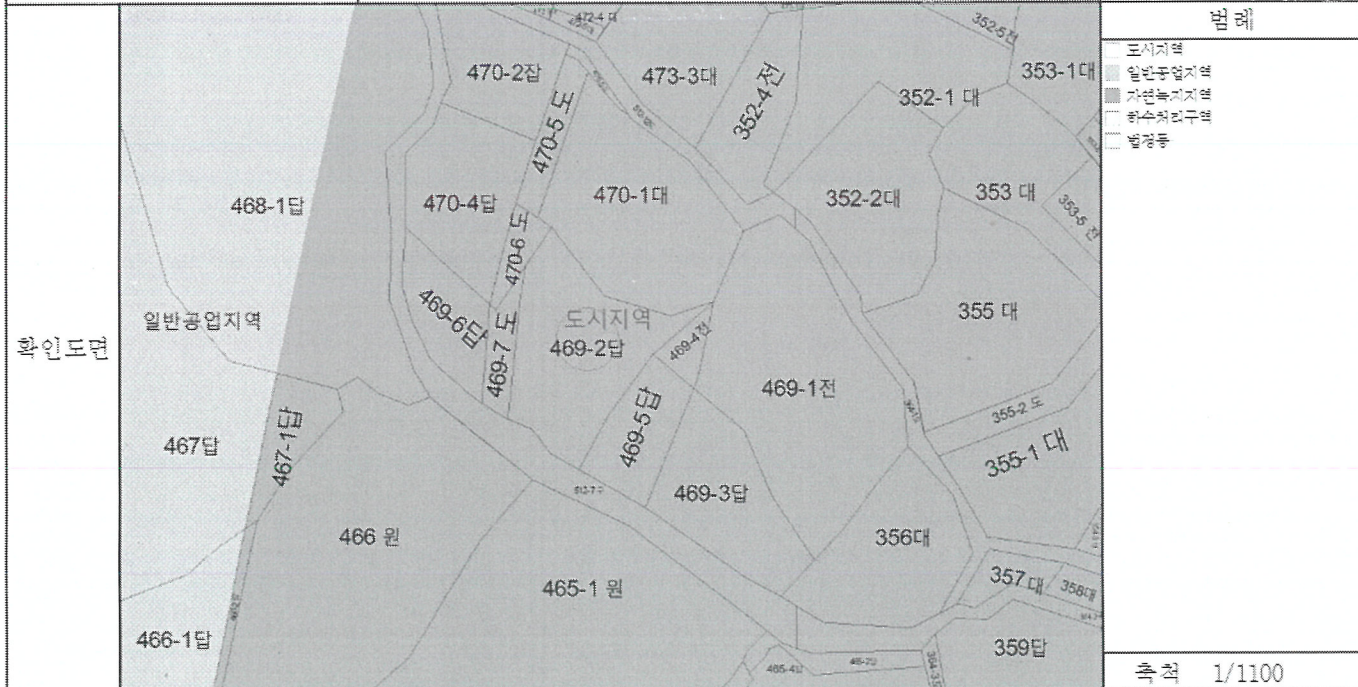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9-2	답	450.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선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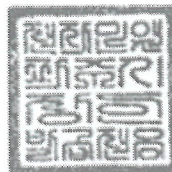
축척 1/1100

수입중지 불이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03/ 25

경기도 파주시장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703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9-4	46.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구역(방사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후인도면					범례
					도시지역 일반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한수정리구역 행정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축척 1/800
2024/ 03/ 25					수입증지 붙이는곳
경기도 파주시장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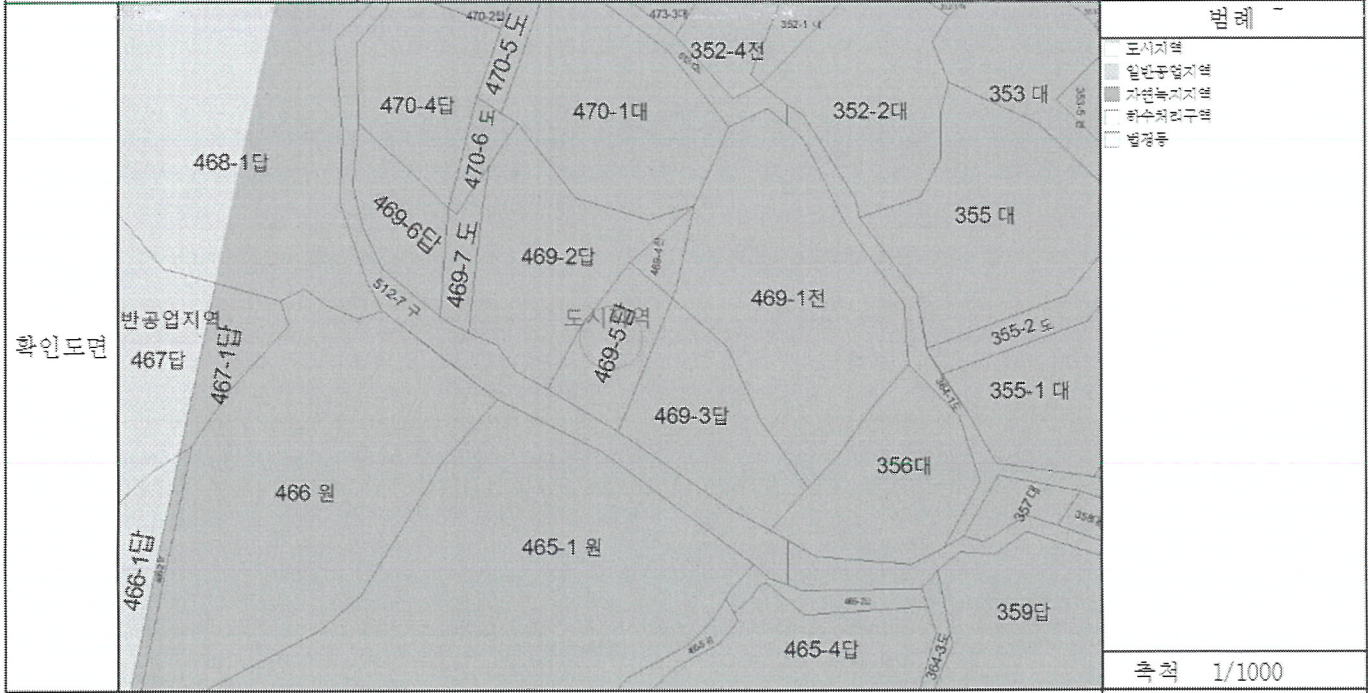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9-5	답	179.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족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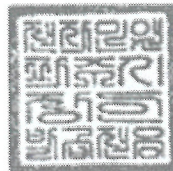


판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한수처리구역 법정수
축척 1/1000
수입중지 불이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03/ 25

경기도 파주시장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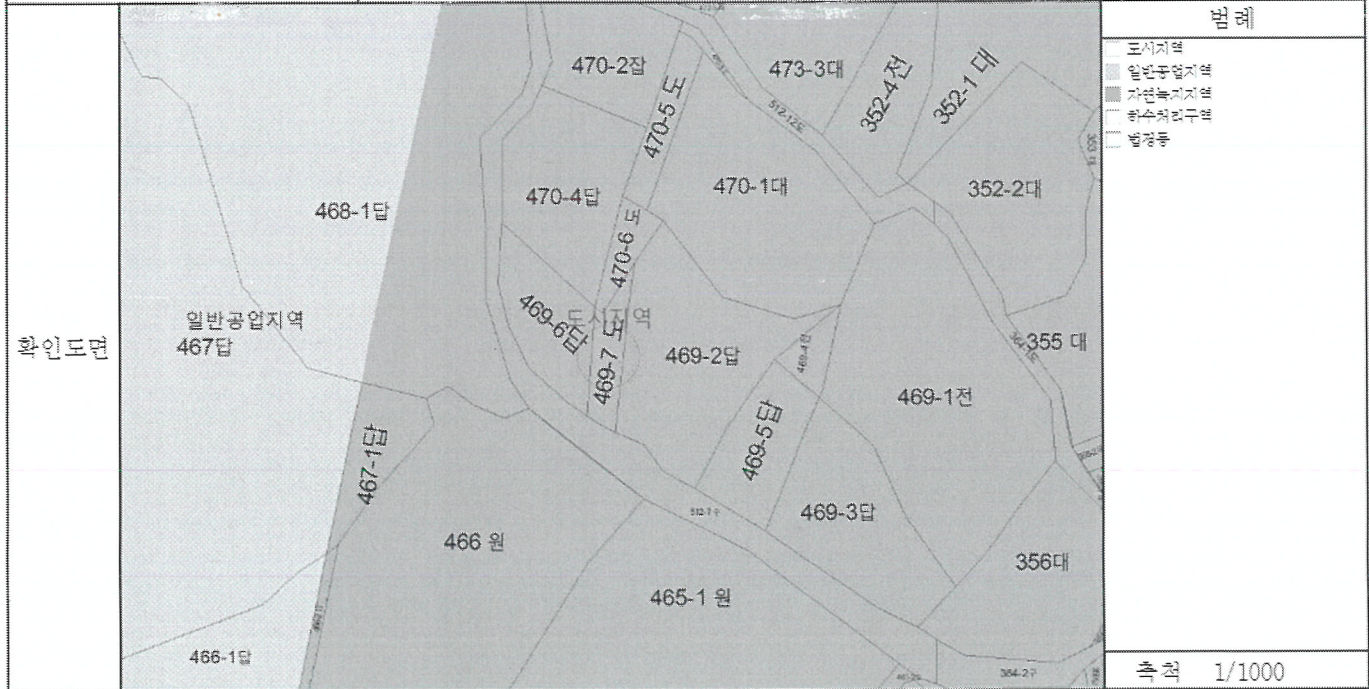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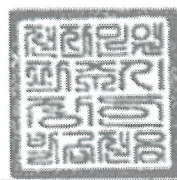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9-7	도로	71.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8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권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03/ 25

경기도 파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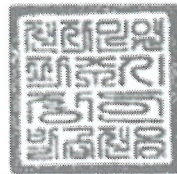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특수제한구역 행정동 						
축척	1/1000						
수입중지 불이은곳	<table border="1"> <tr> <td>수수료</td> <td></td> </tr> <tr> <td>전자결제</td> <td></td> </tr> <tr> <td>민원</td> <td></td> </tr> </table>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561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70-1	대	591.0
지역·지구명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명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명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6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한수청정구역 법정동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03/ 25</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0px; font-weight: bold;">경 기 도 파 주 시 장</p>						축척 1/1100 수입증지 붙이는곳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div>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555

발행대수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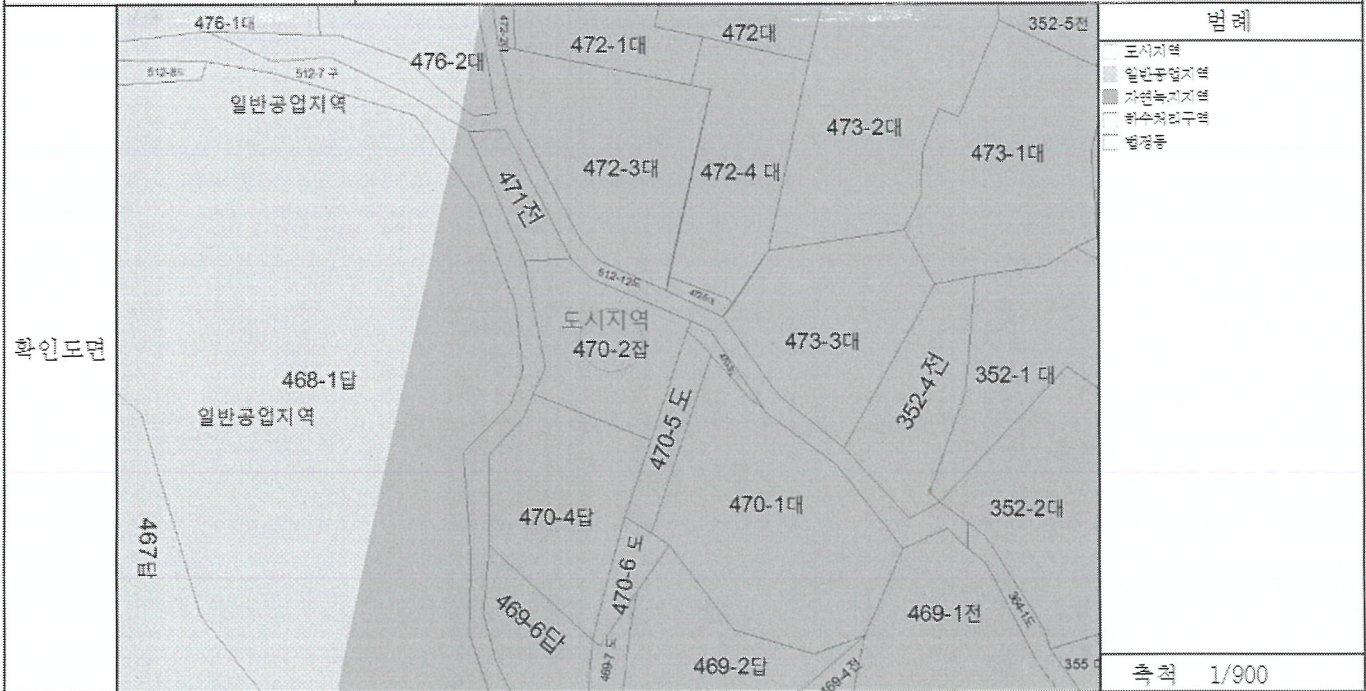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70-2	잡종지	265.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경향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 일반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특수정기구역 □ 법정동
축척 1/900
수입중지 불이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03/ 25

경 기 도 파 주 시 장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718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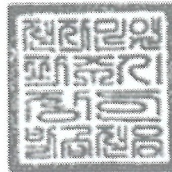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70-3	도로	16.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8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권장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붙임도면						범례 □ 도시지역 □ 일반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특수관리구역 □ 행정동
						축척 1/800 수입증지 붙이는곳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03/ 25 경기도 파주시장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679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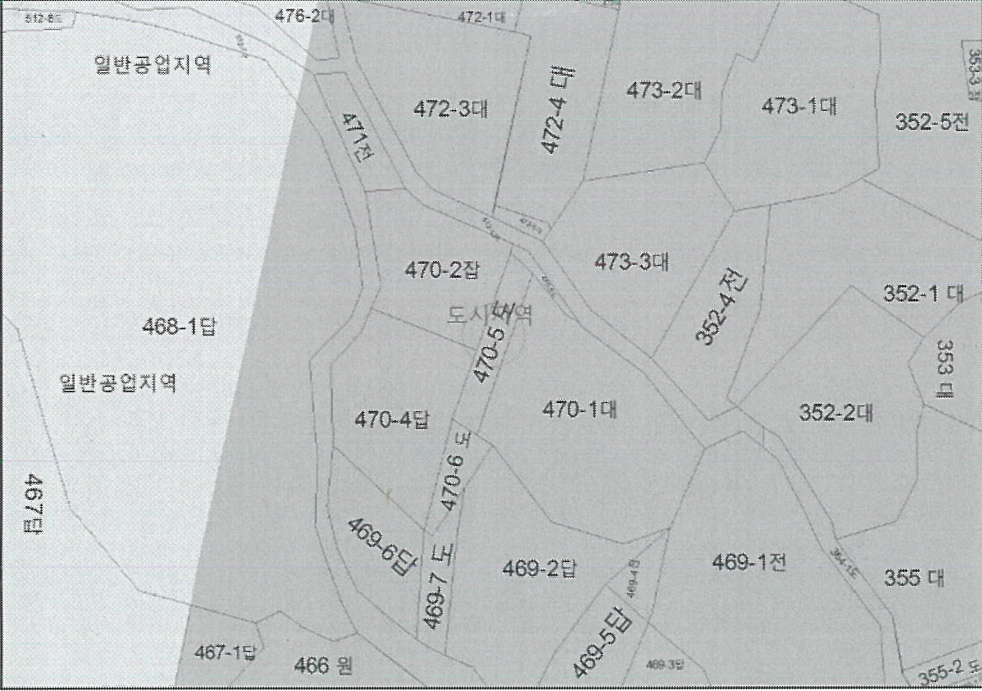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70-4	답	343.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하수처리구역 별정종
						<p>축척 1/1000</p> <p>수입증지 붙이는곳</p>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03/ 25</p> <p style="text-align: center;">경 기 도 파 주 시 장</p>						<p style="text-align: center;">수 수 료 전 자 결 제 인 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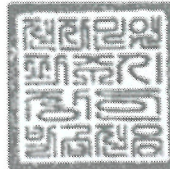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149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지목	면적(m ²)
				470-5	도로	84.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족사용제한구역(전부제한)<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한수처리구역 법정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축척 1/1000 수입증지 붙이는곳
2024/ 03/ 25 경기도 파주시장						수 수 료 전 자 결 제 민 원



발급번호 : 202441480010980666

발행대수 : 1/2

발급일 : 2024/ 03/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발산로 19,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지목	면적(m ²)	
				470-6	도로	53.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원수정원구역 행정동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03/ 25</p> <p style="text-align: center;">경 기 도 파 주 시 장</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수 수 료 전 자 결 제 민 원 </div>		



토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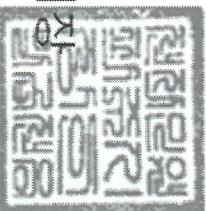
고유번호	4148025622-10359-0000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359	축척	1:1200

도면번호	26	발급번호	202441480-01098-0602
장번호	2-1	처리시각	12시 03분 29초
비고	소유자 발급자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	사유	토지 표시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지적부구	사유	변동원인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02) 담	*2942*	(47) 1961년 08월 01일	지적부구	사유	1954년 01월 04일	355	355	서간단	110809-1*****	580326-1*****	1992. 01. 01.
(02) 담	*2942*	(50) 1996년 03월 01일	파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사유	(11) 회복등기	355	355	서간단	110809-1*****	580326-1*****	1992. 01. 01.
		---- 이하 여백 ----			1984년 12월 28일	355	355	서간단	110809-1*****	580326-1*****	1992. 01. 01.
					(03) 소유권이전	윤철수	윤철수	서간단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04) 주소변경	윤철수	윤철수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03) 소유권이전	윤수용	윤수용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86년 08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89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0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1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2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3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4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5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6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7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8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1999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00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01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02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03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04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05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06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07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08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09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10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11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12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13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14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15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16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17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18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19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20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21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22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23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2024년 01월 01일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110809-1*****	580326-1*****	1992. 01. 01.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대우를 통해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 전위 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를 통한 내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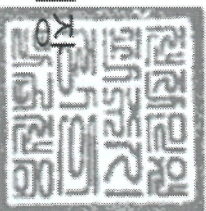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65-0001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7-9952	
토지소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축척	1:1200	장 번호	2-1	치리시각	10시 44분 58초
지번	465-1	토지 표시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변동원인	변동일자		주소	주소	
(02)	*2079*	(30) 1963년 03월 24일	1975년 01월 31일	355				580326-1*****
답		465-3번과 합병	(03) 소유권이전	1991년 12월 30일	문수읍	법원읍 법원리 470-1		580326-1*****
(02)	*2079*	(50) 1996년 03월 01일	1991년 12월 30일		문수읍			580326-1*****
답		파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04) 주소변경	2016년 12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일동558번길 57, 1824동2003호(행정동, 행정마을)			691128-1*****
(24)	*2079*	(40) 2016년 12월 12일	(03) 소유권이전		조성태 외 1인			
유원지		지목변경						
		--- 이하 여백 ---						
등기수정 년월일	1976. 07. 01. 수정	1981. 07. 01. 수정	1984. 07. 01. 수정	1986. 08. 01. 수정	1989. 01. 01. 수정	1990. 01. 01. 수정	1991. 01. 01. 수정	1992. 01. 01. 수정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26)	43	96	98	100	110	117	122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89500	90000	92300	94100	98200	101300	935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신청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케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65-0001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5-1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7-9952
장번호	2-2	처리시각	10시 44분 58초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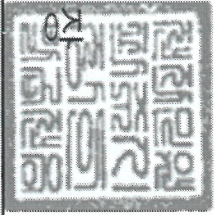
소유자

주소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변동일자	변동원인	비고		
토지등본 (기준수확량등급)	129						
개별공시지가(기준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민원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신청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11-3352-0876-1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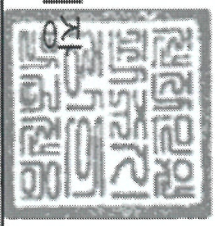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65-0002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1480-01098-0542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정 번호	2-1	처리시각	11시 52분 55초
지번	465-2	축척	1:1200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변동원인	변동일자				
(02) 담	*60*	(20) 1961년 12월 29일 분할되어 본번에 -4, -5를 부합	1963년 05월 15일	(03) 소유권이전	355	문월수	110809-1*****	
(02) 담	*60*	(50) 1996년 03월 01일 파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1995년 09월 27일	(18) 등록번호경정	355	문월수	110809-1*****	
		--- 이하 야백 ---	2002년 01월 22일	(03) 소유권이전		법원리 470-1	580326-1*****	
			2017년 01월 18일	(03) 소유권이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인로558번길 57, 1824동2003호(철신동, 햇빛마을)	691128-1*****	
등기수정 년월일	1976. 07. 01. 수정	1981. 07. 01. 수정	1984. 07. 01. 수정	1986. 08. 01. 수정	1989. 01. 01. 수정	1990. 01. 01. 수정	1991. 01. 01. 수정	1992. 01. 01. 수정
토지등본 (기준수확량등본)	(26)	42	93	95	100	110	117	122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89500	90000	92300	94100	98200	101300	985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에 gov(가)의 인터넷민원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신뢰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65-0002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5-2	축척	1:1200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542
장번호	2-2	처리시각	11시 52분 55초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 표시

소유자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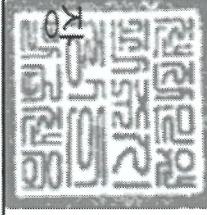
변동일자
 변동원인
 --- 이하 여백 ---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토지등권 (기준수확량등급)	129		1993. 01. 01. 수정			
개별공시지가기준일			1994. 01. 01. 수정			
개별공시지가(원/㎡)			1995. 01. 01. 수정			용도지역 등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에(00v.kr)의 인터넷민원문서지원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마이크로도
 선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11-3359-4191-0689

토지 대장

토지 표시

소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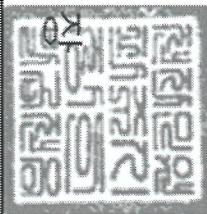
주소

고유번호	4148025622-10465-0004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625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장번호	2-1	처리시각	12시 05분 29초	
지번	465-4	축척	1:1200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2)	*2136*	(21) 1961년 12월 29일	1963년 05월 15일	355				
답		465-1번에서 분할	(03) 소유권이전	윤철수		110809-1*****		
(02)	*2136*	(50) 1996년 03월 01일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110809-1*****		
답		파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04) 주소변경	윤철수		110809-1*****		
(02)	*1798*	(20) 2007년 08월 10일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580326-1*****		
답		분할되어 본번에 -6을 부합	(03) 소유권이전	윤수용		580326-1*****		
		--- 이하 여백 ---	2017년 01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68번길 57, 1824동2003호(헬스동, 햇빛마을)		691128-1*****		
등기수정 년월일	1976. 07. 01.	1981. 07. 01.	1984. 07. 01.	1986. 08. 01.	1989. 01. 01.	1990. 01. 01.	1991. 01. 01.	1991. 04. 01.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26)	45	100	102	105	110	105	117
개별공시지가(원/㎡)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89500	90000	92300	92300	98200	101300	935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4(09V.KF)의 인터넷발급신청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확인의 바코드로도 전자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11-3327-9907-4388

토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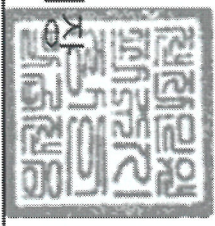
고유번호	4148025622-10465-0005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179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정 번호	2-1	처리시각	11시 12분 03초
지번	465-5	축척	1:1200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	사유	토지 표시			소유자		주소		등록번호
			변동일자	변동원인	355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02)	*251*	(21) 1961년 12월 29일	1974년 12월 31일	1974년 12월 31일	355	범원리 470-1	580326-1*****			
담		465-2번에서 분할	(03) 소유권이전	2001년 03월 24일	윤수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안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헬스동, 햇빛마을)	580326-1*****			
(02)	*251*	(50) 1996년 03월 01일	2001년 03월 24일	(04) 주소변경	윤수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안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헬스동, 햇빛마을)	580326-1*****			
담		피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04) 주소변경	2016년 12월 29일	윤수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안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헬스동, 햇빛마을)	580326-1*****			
(24)	*251*	(40) 2016년 12월 12일	2016년 12월 29일	(03) 소유권이전	조선태 외 1인	조선태 외 1인	691128-1*****			
유원지		지목변경	----- 이하 여백 -----							

등기수정 년월일	1976. 07. 01.	1981. 07. 01.	1984. 07. 01.	1986. 08. 01.	1989. 01. 01.	1990. 01. 01.	1991. 01. 01.	1992. 01. 01.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26)	45	100	102	105	110	100	122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89500	90000	92300	94100	96200	101300	985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나, 첨부(00V.K)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매뉴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마크드로도 진위확인(장부명) 웹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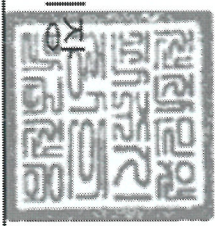
고유번호	4148025622-10465-0005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5-5	축척	1:1200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179
장번호	2-2	처리시각	11시 12분 03초
비고	소유자 발급자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	사유	토지표시				소유자				
			등기수정 년월일	1993. 01. 01. 수정	1994. 01. 01. 수정	1995. 01. 01. 수정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토지등적 (기준수확량등급)	129	136									
개발공시지가(원/㎡)											용도지역 등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09V-K) 외 인터넷발급문서확인 사이트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 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11-3355-9971-5573

토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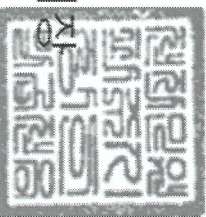
고유번호	4148025622-10465-0006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1480-01098-0571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장 번호	1-1	처리시각	1시 59분 01초
지 번	465-6	축척	1:1200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지 목	면적(㎡)	사유	토지 표시			소유자			등록번호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 록 번 호		
(02) 담	*338*	(21) 2007년 08월 10일 465-4번에서 분할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윤수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1824동2003호(월신동, 햇빛마을)	580326-1*****	691128-1*****	
(24) 유원지	*338*	(40) 2016년 12월 12일 지목변경	2016년 12월 29일	(03) 소유권이전	조삼태 외 1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1824동2003호(월신동, 햇빛마을)	580326-1*****	691128-1*****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등기수정 년월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토지 등기 (기준수확량(등급))							
개발공시지가(원/㎡)	89500	90000	92300	92300	98200	101300	985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00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1480-01098-0384
장 번호	2-1	처리시각	12시 1분 33초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 표시

소유자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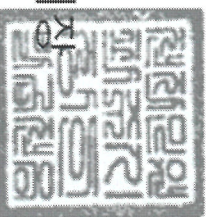
등록번호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변동원인	변동일자			
(02)	*2010*	(47) 1961년 08월 01일	1953년 12월 19일	355			
담		지적목구	(11) 회복등기	문철수		110809-1*****	
(02)	*2010*	(50) 1996년 03월 01일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담		피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04) 주소변경	문철수		110809-1*****	
(02)	*1402*	(20) 2007년 08월 10일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담		분할되어 본번에 -1을 부함	(03) 소유권이전	윤수용		580326-1*****	
(02)	*1350*	(20) 2016년 12월 12일	2016년 12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안동558번길 57,1824동2003호(행신동, 햇빛마을)			
담		분할되어 본번에 -2를 부함	(03) 소유권이전	조성태 외 1인		691128-1*****	
등급수정 년월일	1976. 07. 01.	1981. 07. 01.	1986. 08. 01.	1989. 01. 01.	1990. 01. 01.	1991. 01. 01.	1992. 01. 01.
토지등급 (기준수환양등급)	(26)		102	105	110	118	125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89500	90000	94100	98200	101300	935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차(OPV-K)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 전자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66-0000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지번	466	축척	1:1200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1480-01098-0584
장번호	2-2	처리시각	12시 01분 33초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 토지 표시

소유자

주소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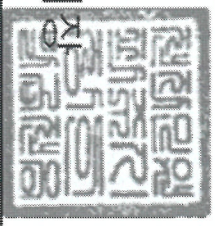
등록번호

지목	면적(㎡)	지목변경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변동일자	비고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4) 유원지	*1350*	(40) 2016년 12월 12일				--- 이하 야백 ---		
		--- 이하 야백 ---						
등기수정 년월일	1993. 01. 01.	1994. 01. 01.	1995. 01. 01.					
토지등기 (기준수확양(등급))	131	137	143					
개발공시지가(기준일)								용도지역 등
개발공시지가(원/㎡)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00V-K)의 인터넷발급문서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허단의 마코드로도 전자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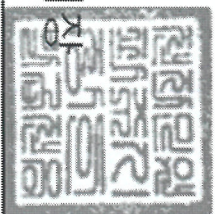
고유번호	4148025622-10466-0001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499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장번호	1-1	처리시각	1시 48분 30초
지번	466-1	축척	1:1200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	사유	토지 표시		변동 일자		소유자		등록번호	
			번	포	번	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02) 담	*608*	(21) 2007년 08월 10일 466번에서 분할	---	이하	야백	---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580326-1*****	
							2017년 01월 16일	문수용		
							(03) 소유권이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2003호(웹시동, 햇빛마을)		
						(03) 소유권이전	조선태 외 1인	691128-1*****		
							---	이하	야백	---

등기수정 등년월일	137000	138000	138000	141200	158500	165800	148300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원/㎡)	137000	138000	138000	141200	158500	165800	1483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00V.KF)의 인터넷발급문서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년의 바코드로도
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

고유번호		4148025622-10466-0001		장 번호		1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비 고			
순번	변 동 일 지 변 동 원 인	소유권 지분	지분	466-1	주소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000001	2017년 01월 16일	1/2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8번길 57, 1824동2003호(행신동, 햇빛마을)			691128-1***** 조성태
	(03) 소유권이전						
000003	2018년 01월 25일	1/2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나길 3(삼선동1가)			651010-1***** 이성준
	(04) 주소변경						
				--- 이하 여백 ---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에(00v.k)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문도 진위확인(장부24 열 또는 크게내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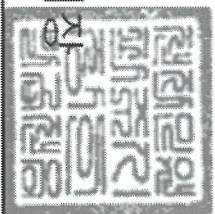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66-0002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473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장번호	1-1	처리시각	1시 44분 26초
지번	466-2	축척	1:1200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 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등록번호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02) 담	*52* (21) 2016년 12월 12일 466번에서 분할	사유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2003호(웹시동, 햇빛마을)		580326-1*****
			(03) 소유권이전	문수용			
			2017년 01월 16일	조삼태 외 1인			
			(03) 소유권이전	조삼태 외 1인	691128-1*****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등기수정 등년월일							
토지등기 (기준수확양등급)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원/㎡)	89500	90000	92300	94100	98200	101300	935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자료(GOV-K)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년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청 웹 또는 스키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11-3313-1362-5869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69-0002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1480-01097-9976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장 번호	2-1	처리시각	10시 47분 31초
지번	469-2	축척	1:1200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 표시

소유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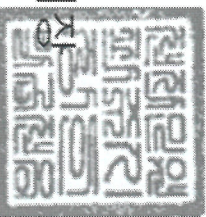
등록번호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변동원인	355			
(02)	*698*	(20) 1961년 12월 29일	1953년 12월 29일	355			
담		분할되어 본만에 -4, -5를 부합	(11) 회복등기	문철수		110809-1*****	
(02)	*698*	(50) 1996년 03월 01일	1993년 05월 01일	470-1			
담		피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04) 주소변경	문철수		110809-1*****	
(02)	*450*	(20) 2007년 08월 10일	1993년 05월 01일	범원리 470-1			
담		분할되어 본만에 -6, -7을 부합	(03) 소유권이전	윤수용		580326-1*****	
		--- 이하 여백 ---	2017년 03월 1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헬스동, 햇빛마을)			
			(03) 소유권이전	조성태 외 1인		691128-1*****	
등기수정 년월일	1976. 07. 01.	1981. 07. 01.	1986. 08. 01.	1989. 01. 01.	1990. 01. 01.	1991. 01. 01.	1992. 01. 01.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26)	45	102	105	110	105	118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원/㎡)	106600	107200	111700	113900	119800	125600	1159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에(00v_kr)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버튼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확인의 마크드로도
 전자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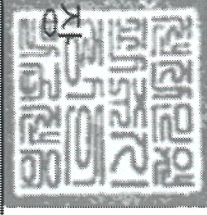
고유번호	4148025622-10469-0002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1480-01097-9976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장 번호	2-2	처리시각	10시 47분 31초
지번	469-2	축척	1:1200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 대장

지목	면적(㎡)	사유	토지 표시					소유자		주소	등록번호
			등기수정 년월일	1993. 01. 01. 수정	1994. 01. 01. 수정	1994. 08. 01. 수정	1995. 01. 01. 수정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이하 여백		
토지 등적 (기준수확량등급)	127										
개발공시지가기준일											
개발공시지가(원/㎡)											용도지역 등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00V-K)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매뉴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허단의 마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11-3345-9822-0470

토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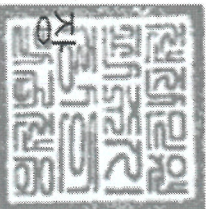
고유번호	4148025622-10469-0004		
토지소세	경기도 피주시 법원읍 법원리	축척	1:1200
지번	469-4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455
장번호	2-1	처리시각	11시 43분 00초
비고	소유자		
		발급자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변동원인	일		주소	등기번호	
(01) 전	*46*	(21) 1961년 12월 29일 469-2번에서 분할	1953년 12월 29일	천현면 법원리 355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580326-1*****	
(01) 전	*46*	(50) 1996년 03월 01일 피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11) 회복등기	윤철수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691128-1*****	
		--- 이하 여백 ---	1993년 05월 01일	윤수용	법원리 470-1	법원리 470-1	580326-1*****	
			(03) 소유권이전	윤수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헬스동, 햇빛마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헬스동, 햇빛마을)		
			(03) 소유권이전	조성태 외 1인				
등기수정 년월일	1981. 07. 01.	1984. 07. 01.	1987. 05. 01.	1989. 01. 01.	1990. 01. 01.	1991. 01. 01.	1992. 01. 01.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수정 40	수정 86	수정 102	수정 109	수정 140	수정 144	수정 148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원/㎡)	81200	81600	83800	85500	89600	94000	867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피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파일(pdf)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 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를 통한 내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69-000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축척	1:1200
지번	469-4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455
장번호	2-2	처리시각	11시 43분 00초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표시

소유자

주소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 소	등록번호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기수정 년월일	1993. 01. 01. 수정	1994. 01. 01. 수정				
-------------	---------------------	---------------------	--	--	--	--

토지동량 (기준수확량등급)	151	155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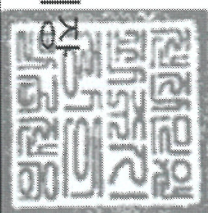
개발공시지가(기준일)						용도지역 등
-------------	--	--	--	--	--	--------

개발공시지가(원/㎡)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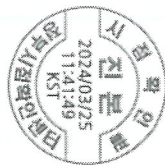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00v-kr)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스케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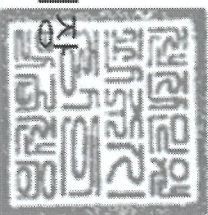
고유번호	4148025622-10469-0005		
토지소세	경기도 피주시 법원읍 법원리	축척	1:1200
지번	469-5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431
장번호	2-1	처리시각	11시 40분 03초
비고	소유자 발급자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변동원인	법원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02) 담	*179*	(21) 1961년 12월 29일 469-2번에서 분할	1953년 12월 29일	법원리 355	윤철수	법원리 470-1	580326-1*****	
(02) 담	*179*	(50) 1996년 03월 01일 피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11) 회복등기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윤철수	법원리 470-1	691128-1*****	
		--- 이하 여백 ---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윤수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헬스동, 햇빛마을)		
			(03) 소유권이전 2017년 03월 17일	조성태 외 1인				
등기수정 년월일	1976. 07. 01. 수정	1981. 07. 01. 수정	1984. 07. 01. 수정	1986. 08. 01. 수정	1989. 01. 01. 수정	1990. 01. 01. 수정	1991. 01. 01. 수정	1992. 01. 01. 수정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26)	42	93	95	100	110	105	117
개별공시지가(원/㎡)	2017년 01월 01일 73100	2018년 01월 01일 73500	2019년 01월 01일 75400	2020년 01월 01일 76900	2021년 01월 01일 80500	2022년 01월 01일 84500	2023년 01월 01일 78000	용도지역 등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피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차(90W K)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확인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차 웹 또는 키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69-0005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9-5	축척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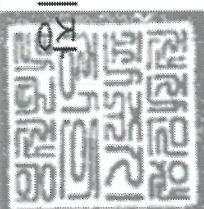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431
장번호	2-2	처리시각	11시 40분 03초
비고		발급처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m ²)	시유	토지표시			소유자		등록번호
			등기수정 년월일	1993.01.01. 수정	1994.01.01. 수정	1995.01.01. 수정	변동일자 변동원인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125	134						
개별공시지가(원/m ²)								용도지역 등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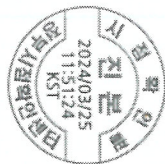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09V.KT)의 인터넷발급신청확인 메뉴를 통해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년의 바코드로도
 전자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

고유번호	4148025622-10469-0005		정 번호	1	
토지소체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비 고		
지번	469-5		소유지		
순번	변 동 일 자	소유권 지분	주 소	등록번호	
	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000001	2017년 03월 17일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2013호(행신동, 햇빛마을)	691128-1*****	
	(03) 소유권이전			조성태	
000003	2019년 05월 01일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나길 3 (삼선동1가)	651010-1*****	
	(04) 주소변경			이상준	
			--- 이하 여백 ---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09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69-0006		
토지소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축척	1:1200
지번	469-6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522
장번호	2-1	처리시각	1시 50분 33초
비고	소유자 인티넷민원		

토지표시

소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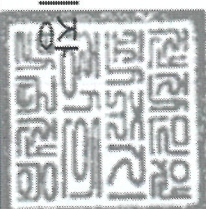
주소

지목	면적(㎡)	시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변동원인	법원리 470-1		
(02)답	*177* 469-2번에서 분할	(21) 2007년 08월 10일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580326-1*****	
			(03) 소유권이전	문수용		
			2017년 05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행신동, 햇빛마을)		
			(03) 소유권이전	조성태		
			2018년 03월 07일			
			(14) 소유자말소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03) 소유권이전	문수용	580326-1*****	
등록수정 년월일						
토지통급 (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원/㎡)	106600	107200	111700	113900	125800	131900
						1217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나, 첨부24(09x K)와 인터넷발급문서확인란 단어를 통해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 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69-0007		
토지소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축척	1:1200
지번	469-7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418
장번호	1-1	처리시각	11시 38분 30초
비고		발급처	인터넷민원

토지 표시

소유자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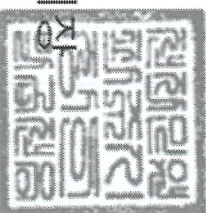
등록번호

지목	면적(㎡)	시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변동원인	법원리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2) 단	*71*	(21) 2007년 08월 10일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580326-1*****		
		469-2번에서 분할	(03) 소유권이전	문수용			
(14) 도로	*71*	(40) 2016년 12월 12일	2016년 12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인동558번길 57, 1824동2003호(헬스동, 햇빛마을)			
		지목변경	(03) 소유권이전	조성태 외 1인	691128-1*****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등기수정 년월일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개발공시지가(종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개발공시지가(원/㎡)	61700	62700	63500	68400	72100	693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차(OPV, K*)와 인터넷발급문서위확인 매뉴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전자확인(첨부2차 열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

고유번호	4148025622-10469-0007		정 번호	1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비 고	
지번	443-7		소유지	
순번	변 동 일 자 변 동 원 인	소유권 지분	주 소	등록번호
				000001
000003	2018년 01월 25일 (04) 주소변경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나길 3(삼선동1가)	651010-1***** 이상준
			-- 이하 여백 ---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09v.kr)와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첨부2)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11-3310-2458-1513

토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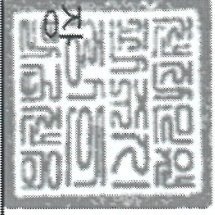
고유번호	4148025622-10470-0001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70-1	축척	1:1200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7-9946
장번호	2-1	처리시각	10시 43분 29초
비고	소유자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	사유	토지 표시		변동 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종류	위치	변동 일자	원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08) 대	*691*	(47) 1986년 04월 15일 지적복구	1953년 12월 29일	법원리 355	1987년 11월 01일	법원리 470-1	윤철수	110809-1*****			
(08) 대	*675*	(20) 1987년 11월 07일 분할되어 본번에 -3을 부합	(11) 회복등기	윤철수	1987년 11월 01일	법원리 470-1	윤철수	110809-1*****			
(08) 대	*675*	(50) 1996년 03월 01일 파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04) 주소변경	윤철수	1993년 04월 17일	법원읍 법원리 470-1	윤수용	580326-1*****			
(08) 대	*591*	(20) 2007년 08월 10일 분할되어 본번에 -5를 부합	(03) 소유권이전	윤수용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길 29(삼선동2가, 4층)	이상준	651010-1*****			
등기수정 년월일	1986. 04. 15.	1987. 05. 01.	1990. 01. 01.	1991. 01. 01.	1992. 01. 01.	1994. 01. 01.	1995. 01. 01.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100	126	150	155	160	167	174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187000	190000	192500	192500	207500	218500	2017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보공개(00V-서)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확인의 비코드로도
 ◆ 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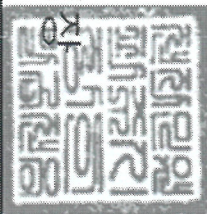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70-0001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7-9946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장 번호	2-2	처리시각	10시 43분 29초
지 번	470-1	축척	1:1200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지 목	면적(㎡)	사유	변동 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 번호
			변동 원 인	2019년 05월 01일			
		이하 여백	(04) 주소변경	이상준	이하 여백		651010-1*****
등기수정 년월일							
토지 등급 (기준수확량등급)							
개발공시지가(원/㎡)							용도지역 등
개발공시지가(원/㎡)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09X.KT)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확인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확도 99.9%)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포문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11-3348-3100-9513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70-0002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70-2	축척	1:1200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486
장번호	2-1	처리시각	11시 46분 31초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 표시

소유자

주소

사유

성명 또는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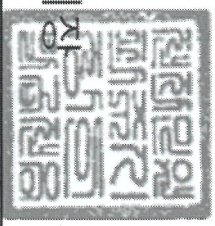
등록번호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면적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변동원인	355				
(02)	*661*	(47) 1986년 04월 15일	1953년 12월 29일	355	법원리 470-1		110809-1*****	
답		지적복구	(11) 회복등기	윤철수				
(02)	*661*	(50) 1996년 03월 01일	1993년 05월 01일	윤철수	법원리 470-1		110809-1*****	
답		피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04) 주소변경	윤수용				
(02)	*265*	(20) 2000년 03월 31일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580326-1*****	
답		분할되어 본번에 -4를 부합	(03) 소유권이전	윤수용				
(28)	*265*	(40) 2000년 03월 31일	2000년 04월 1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312-52			530216-1*****	
접종지		지목변경	(03) 소유권이전	박희택				
등기수정 년월일	1986. 04. 15.	1989. 01. 01.	1991. 01. 01.	1992. 01. 01.	1993. 01. 01.	1994. 01. 01.	1995. 01. 01.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100	105	125	133	141	147	153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원/㎡)	192600	195700	198200	198200	211600	222800	2059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자료(00x.kr)의 인터넷민원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문서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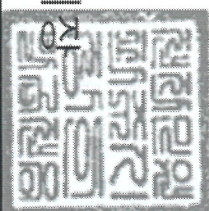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70-0002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486
토지소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장 번호	2-2	치리시각	11시 46분 31초		
지 번	470-2	축척	1:1200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 표시					소유자			
지 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변동원인	변동일자		등 록 번호		
		----- 이하 여백 -----	2005년 01월 25일	법원리 470-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숲이홀로934번길 94	580326-1*****		
			(03) 소유권이전	문수용				
			2013년 11월 19일	(04) 주소변경				
			2017년 03월 17일	문수용				
			(03) 소유권이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헬스동, 햇빛마을)	조성태 외 1인	891128-1*****		
				----- 이하 여백 -----				
등기수정 년 월 일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개발공시지가기준일								용도지역 등
개발공시지가(원/㎡)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90w.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기능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마크도루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70-0003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축척	1:1200
지번	470-3		

도면번호	35	면적번호	20241480-01097-9933
장번호	1-1	처리시각	10시 40분 32초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 표시

소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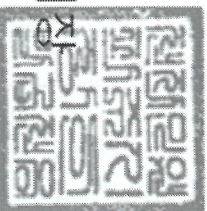
주소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변동원인	일		
(08) 대	*16*	(21) 1987년 11월 07일 470-1번에서 분할	1953년 12월 29일		335	
			(11) 회복등기		문철수	110809-1*****
(14) 도로	*16*	(40) 1987년 11월 09일 지목변경	1987년 11월 10일		문철수	110809-1*****
			(04) 주소변경		법원읍 법원리 470-1	
(14) 도로	*16*	(50) 1996년 03월 01일 파주군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1993년 04월 17일		문수용	580326-1*****
			(03) 소유권이전	2016년 12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일로558번길 57, 1824동2003호(행신동, 햇빛마을)	691128-1*****
		--- 이하 여백 ---	(03) 소유권이전		조성태 외 1인	
등록수정 년월일	1987. 05. 01.	1987. 11. 09.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126	80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원/㎡)	61700	62700	63500	63500	68400	72100
						693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차(99v.kr)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 진위 확인(정부2차 웹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

고유번호	4148025622-10470-0003		장 번호	1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70-3	비고	
순번	변동일자	소유권 지분	주소	소유자	
	변동원인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000001	2016년 12월 29일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2003호(행신동, 햇빛마을)	691128-1*****	
	(03) 소유권이전			조성태	
000003	2018년 01월 25일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나길 3(삼선동1가)	651010-1*****	
	(04) 주소변경			이상준	
			--- 이하 여백 ---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에(99w k)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 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 확인(첨부2에 열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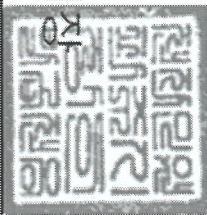
고유번호	4148025622-10470-0004		
토지소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축척	1:1200
지번	470-4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8-0004
장번호	1-1	처리시각	10시 50분 02초
비고	소유자 발급처 인터넷민원		

지목	면적(㎡)	시유	변동일자			주 소			등록번호
			변동원인	법원리	성명 또는 명칭	법원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02) 단	*396*	(21) 2000년 03월 31일 470-2번에서 분할	1993년 05월 01일 (03) 소유권이전	법원리 470-1	영수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행정동, 행정마을)	560326-1*****		
(02) 단	*343*	(20) 2007년 08월 10일 분할되어 본번에 -6을 부합	2017년 03월 17일 (03) 소유권이전	조성태 외 1인	조성태 외 1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행정동, 행정마을)	691128-1*****		
		--- 이하 여백 ---							
등기수정 년월일	1995. 01. 01.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급)	153								
개별공시지가(원/㎡)	2017년 01월 01일 118500	2018년 01월 01일 119100	2019년 01월 01일 124100	2020년 01월 01일 126500	2021년 01월 01일 133200	2022년 01월 01일 139600	2023년 01월 01일 128800	용도지역 등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차(90W Kt)의 인터넷발급문서위확인 매뉴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전자확인(첨부2차 열 또는 스케너를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

고유번호	4148025622-10470-0004		장 번호	1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70-4	비고	
순번	변동일자	소유권 지분	주소	소유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000001	2017년 03월 17일 (03) 소유권이전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88번길 57, 1824동 2003호(행신동, 햇빛마을)	691128-1***** 조성태	
000003	2019년 05월 01일 (04) 주소변경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나길 3 (삼선동1가)	651010-1***** 이상준	
			--- 이하 여백 ---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나, 정부24(www.kr)와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비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711-3341-3434-4837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70-0005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70-5
축척	1:1200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1480-01098-0364
장번호	1-1	처리시각	1시 33분 04초
비고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 표시

소유자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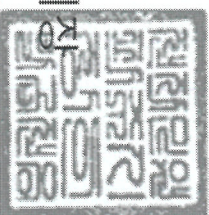
등 록 번 호

지 목	면 적(㎡)	사 유	변 동 일 자		성 명 또는 명 칭		등 록 번 호
			변 동 원 인	1993년 04월 17일	법원읍 법원리 470-1	580326-1*****	
(08) 대	*84*	(21) 2007년 08월 10일 470-1번에서 분할	(03) 소유권이전	1993년 04월 17일	문수용		
(14) 도로	*84*	(40) 2016년 12월 12일 지목변경	2016년 12월 29일	2016년 12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일로558번길 57, 1824동2003호(행신동, 햇빛마을)		691128-1*****
		이 하 여 백			이 하 여 백		
등 록 수 정 년 월 일							
토 지 등 록 (기준수확량등급)							
개발공시지가기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개발공시지가(원/㎡)	61700	62700	63500	63500	68400	72100	693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4(gov.kr)의 인터넷민원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문서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고유번호	4148025622-10470-0006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70-6
축척	1:1200

도면번호	35	발급번호	202441480-01097-9923
장번호	1-1	처리시각	10시 37분 51초
비고		발급처	인터넷민원

토지표시

소유자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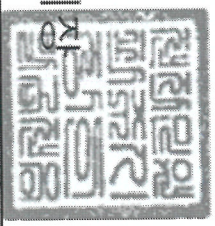
등록번호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변동원인	법원리 470-1	주소			
(02) 답	*53*	(21) 2007년 08월 10일 470-4번에서 분할	1993년 05월 01일	법원리 4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인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 (행신동, 햇빛마을)	580326-1*****		
(14) 도로	*53*	(40) 2016년 12월 12일 지목변경	2016년 12월 29일	조성태 외 1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인로558번길 57, 1824동 2003호 (행신동, 햇빛마을)	601128-1*****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등급수정 년월일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원/㎡)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61700	62700	63500	63500	68400	72100	693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첨부2(400x, kg)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버튼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장부제) 및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포도그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

고유번호	4148025622-10470-0006				장 번호	1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7-0-8	비고			
순번	변동일자		소유권지분	주소	소유지			
	변동원인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000001	2016년 12월 29일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57, 1824동2003호(헬신동, 햇빛마을)	691128-1*****			
	(03) 소유권이전				조성태			
000003	2018년 01월 25일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나길 3(삼선동1가)	651010-1*****			
	(04) 주소변경				이삼준			
				--- 이하 이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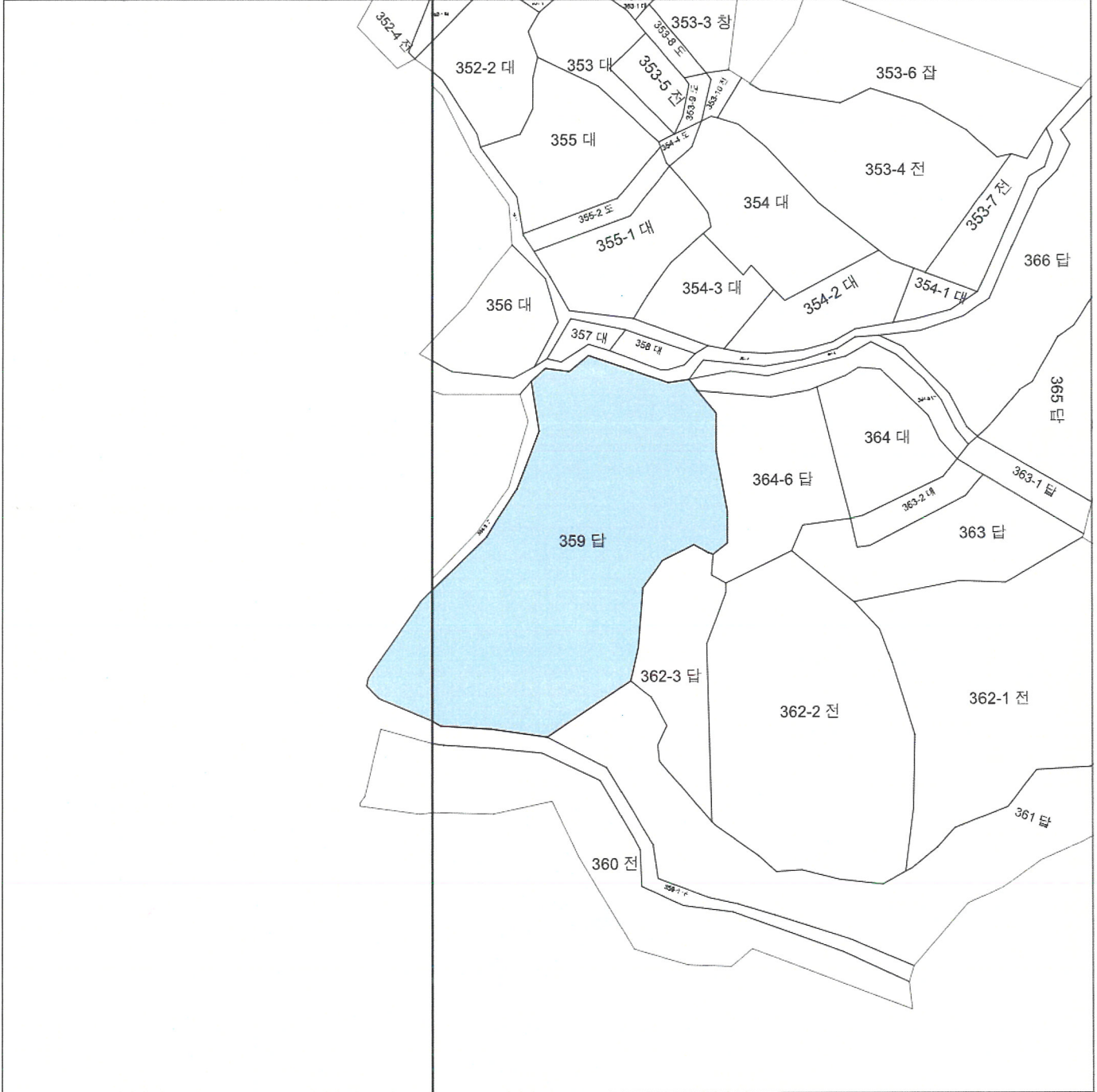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로드루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20-5781-9231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686	처리시각	18시 40분 56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359번지	축척	수령:1/1200 출발: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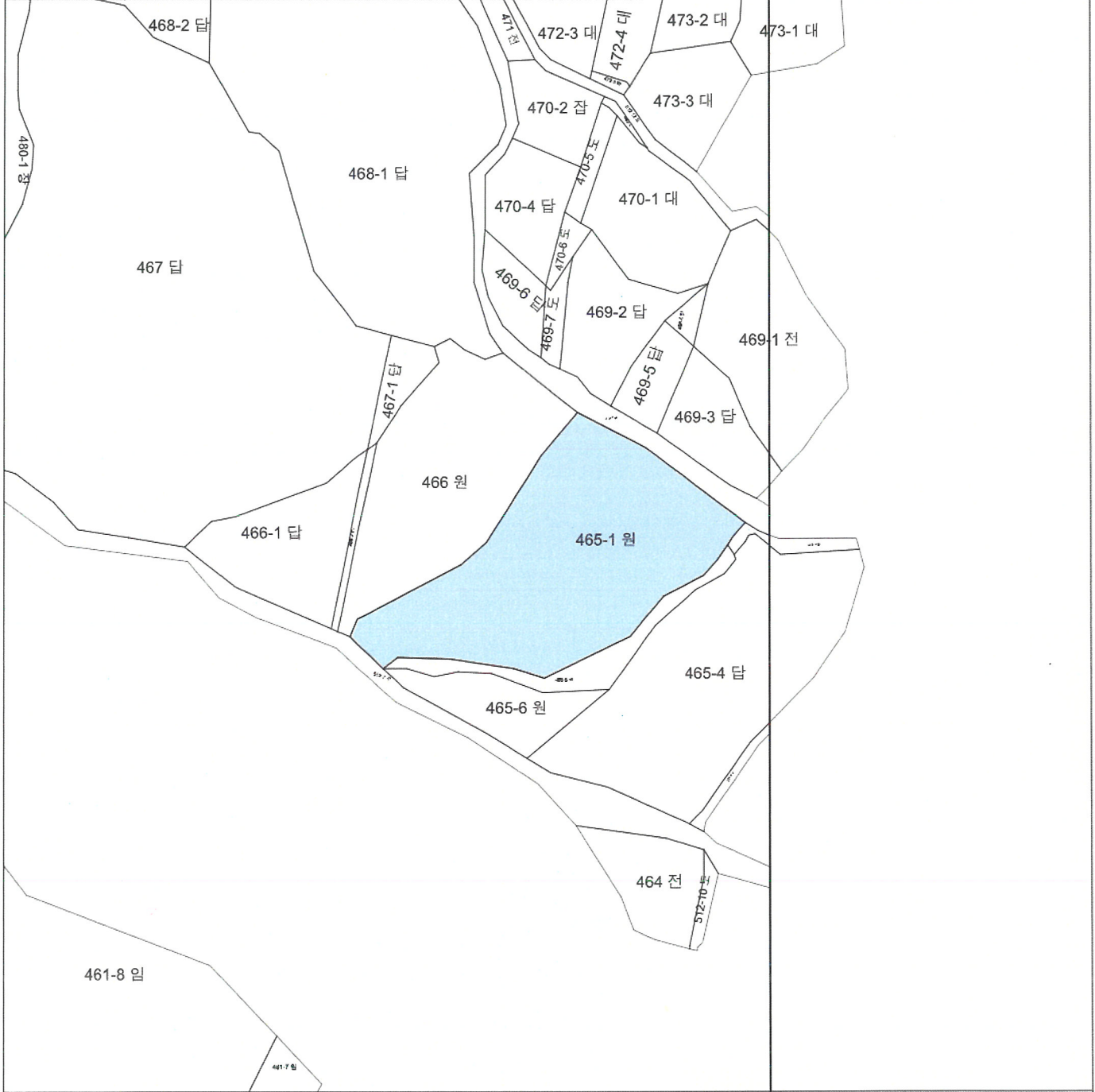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07-0950-7934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585	처리시각	18시 18분 27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5-1번지	축척	수평:1/1200 수직: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20-2839-6738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683	처리시각	18시 40분 27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5-2번지	축척	수평:1/1200 수직: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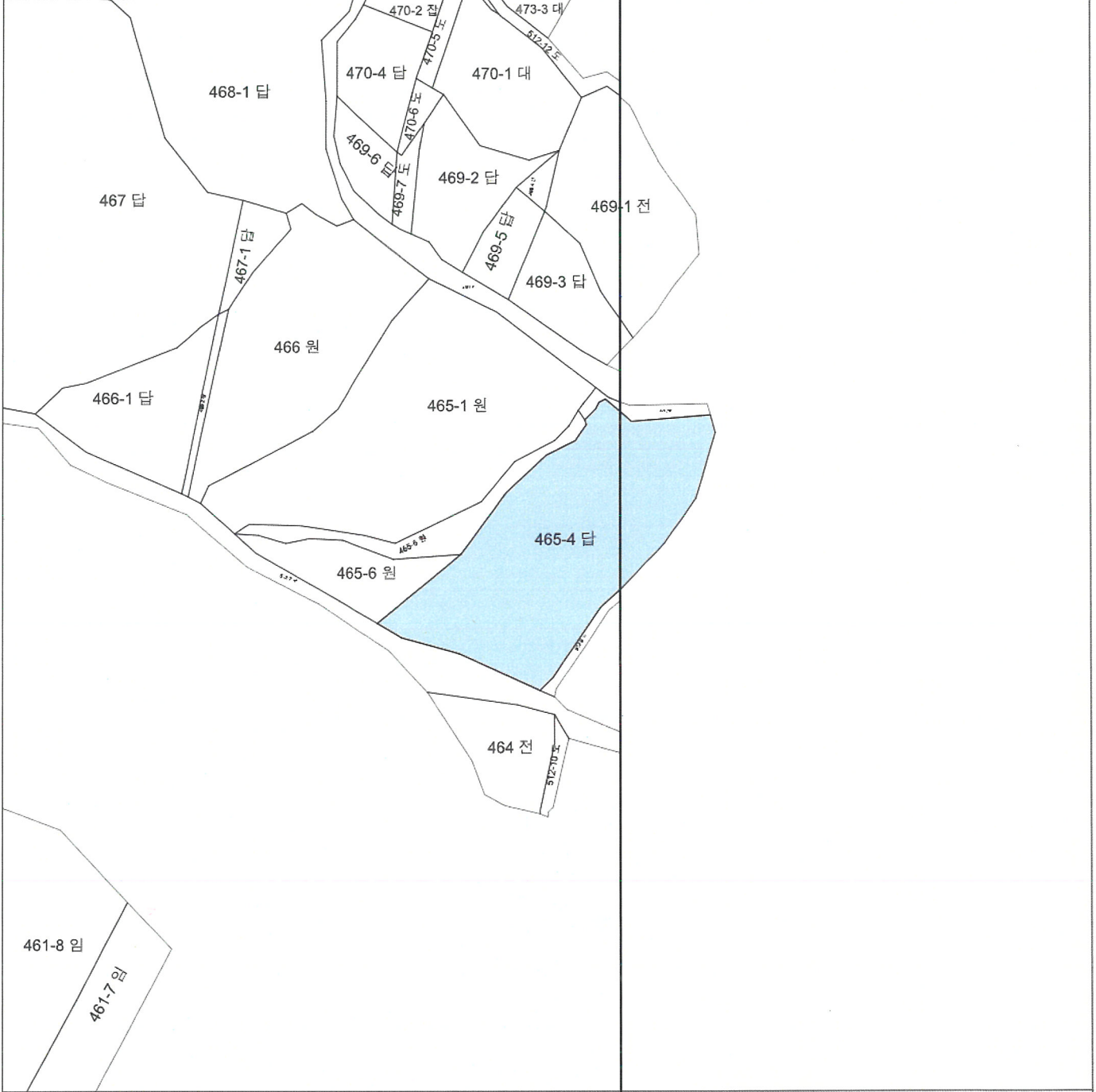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06-7767-1283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582	처리시각	18시 17분 56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5-4번지	축척	등록:1/1200 출력: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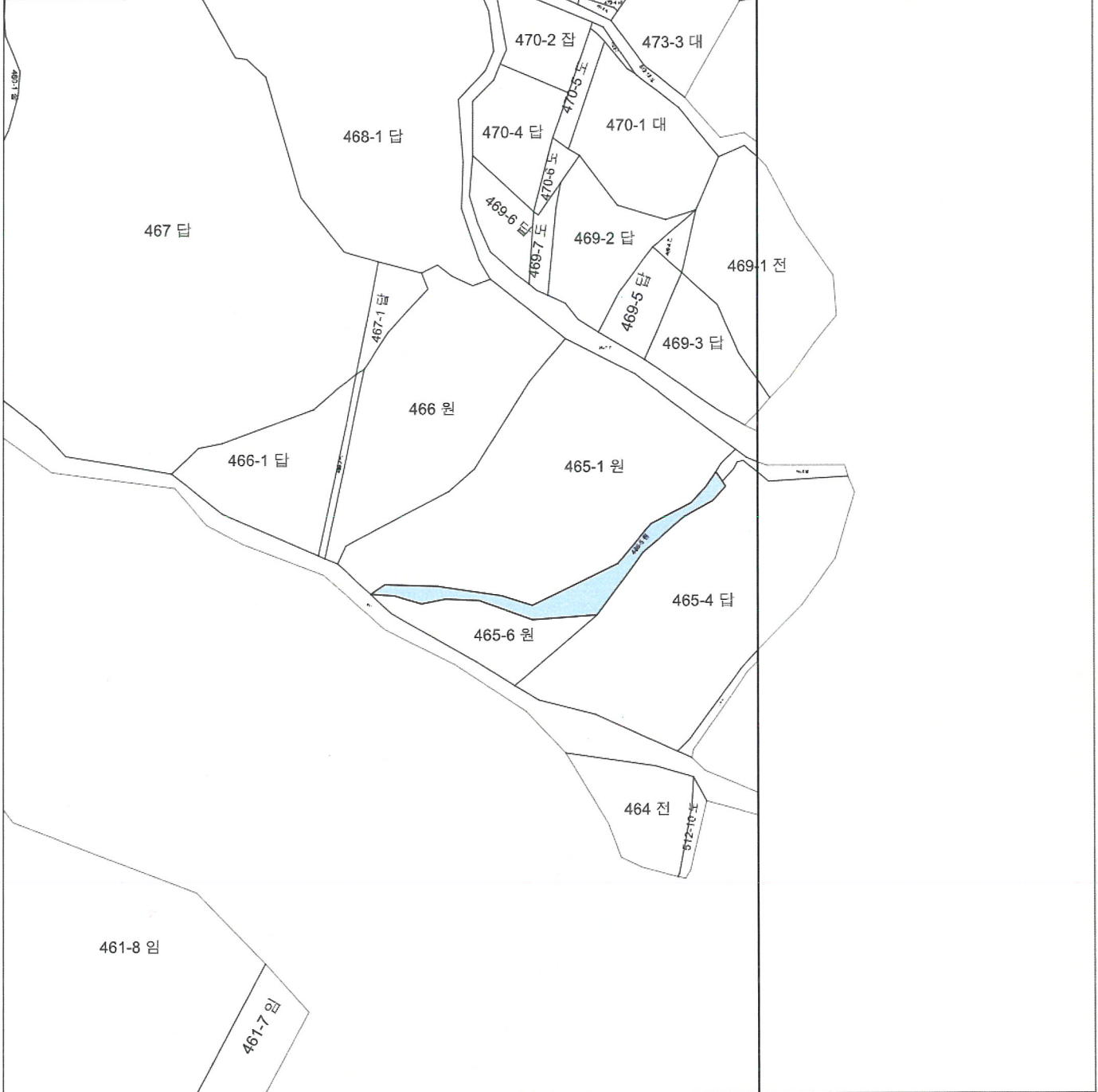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19-9780-1314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679	처리시각	18시 39분 56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5-5번지	축척	수평:1/1200 수직: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06-4777-1974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577	처리시각	18시 17분 26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5-6번지	축척	기준축척:1/1200 출력축척: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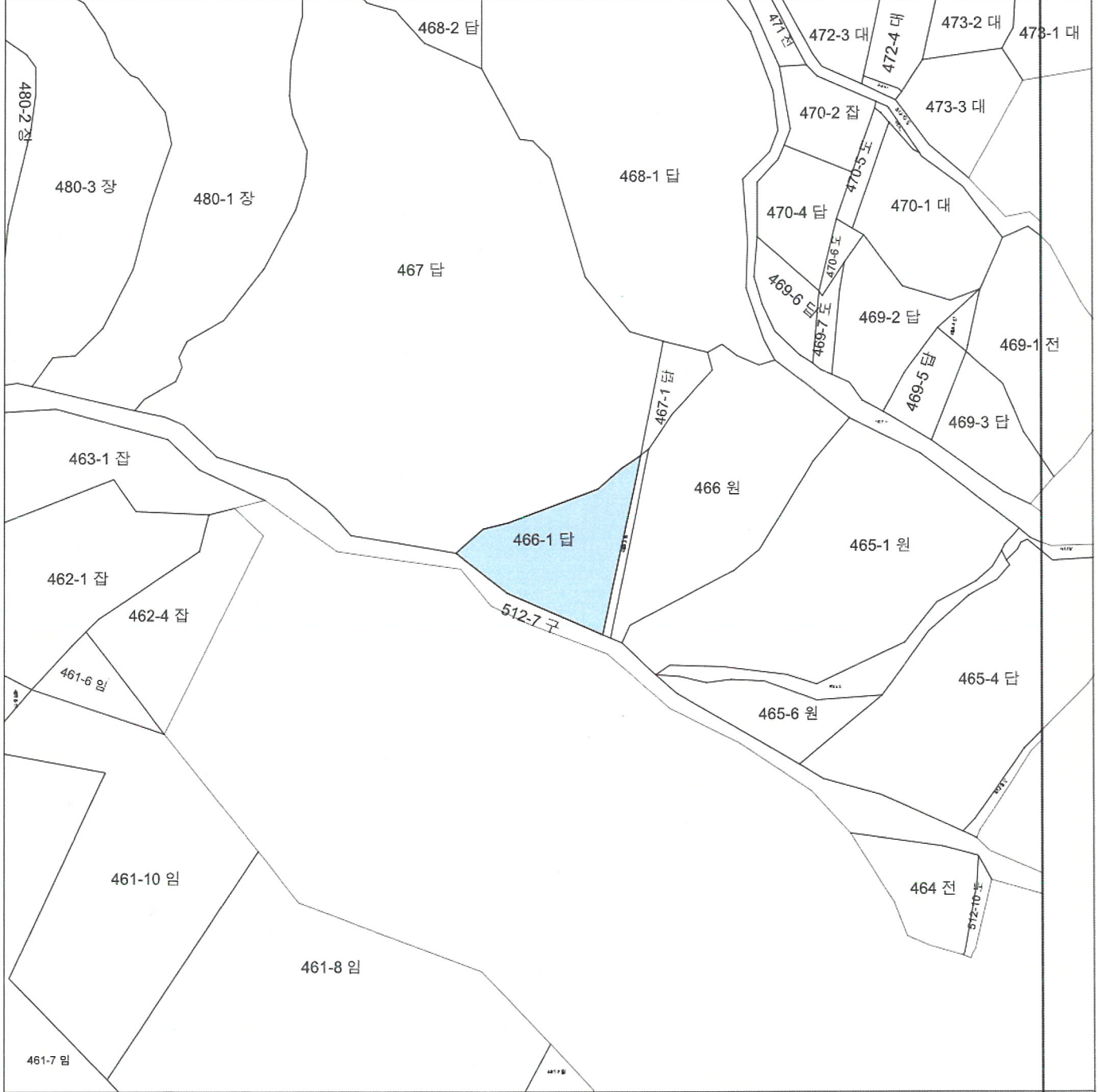
◆ 본 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05-8900-7659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572	처리시각	18시 16분 26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지번	466-1번지	축척	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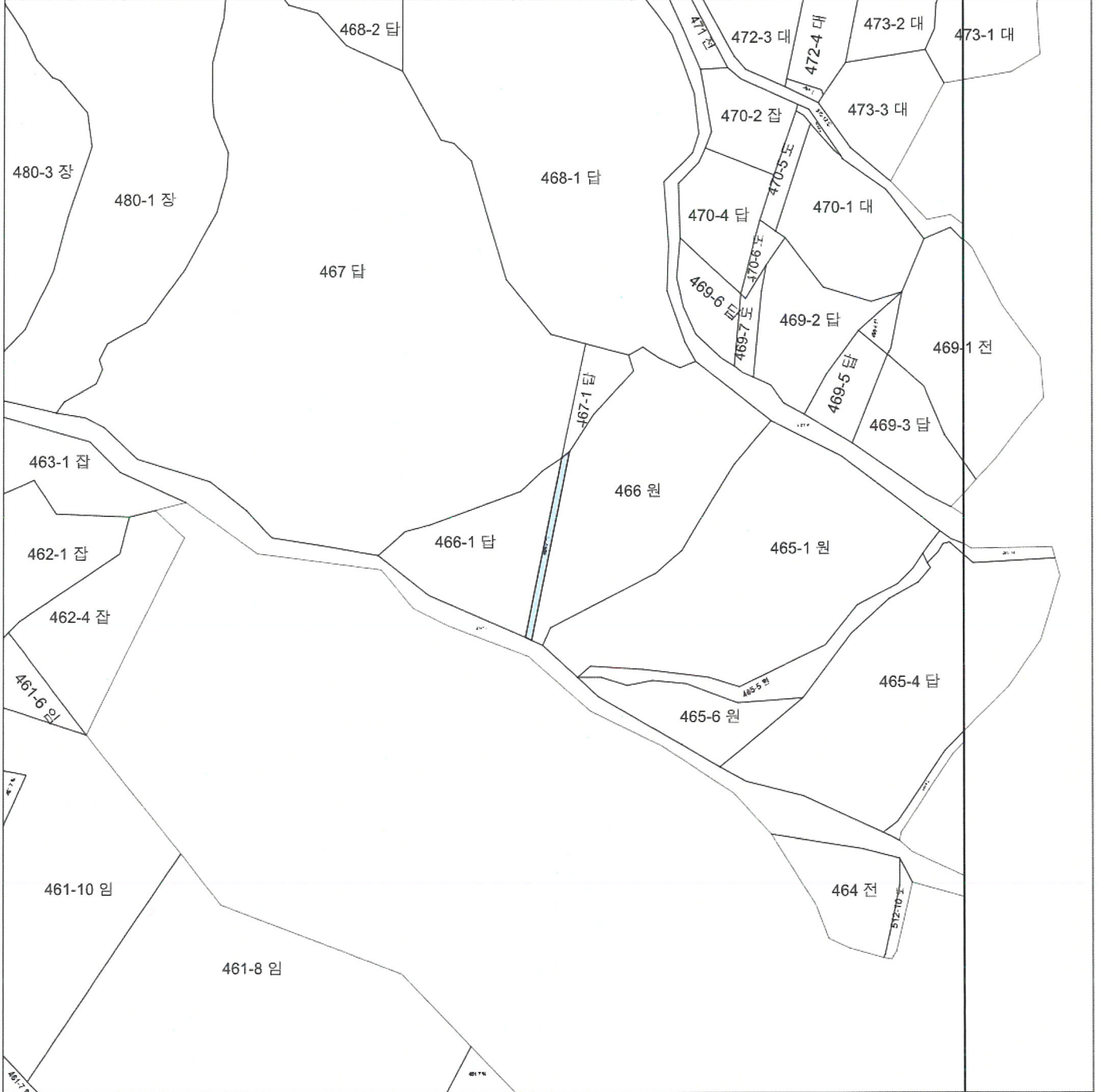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19-6783-2556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675	처리시각	18시 39분 26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6-2번지	축척	출력비율:1/1200 원본: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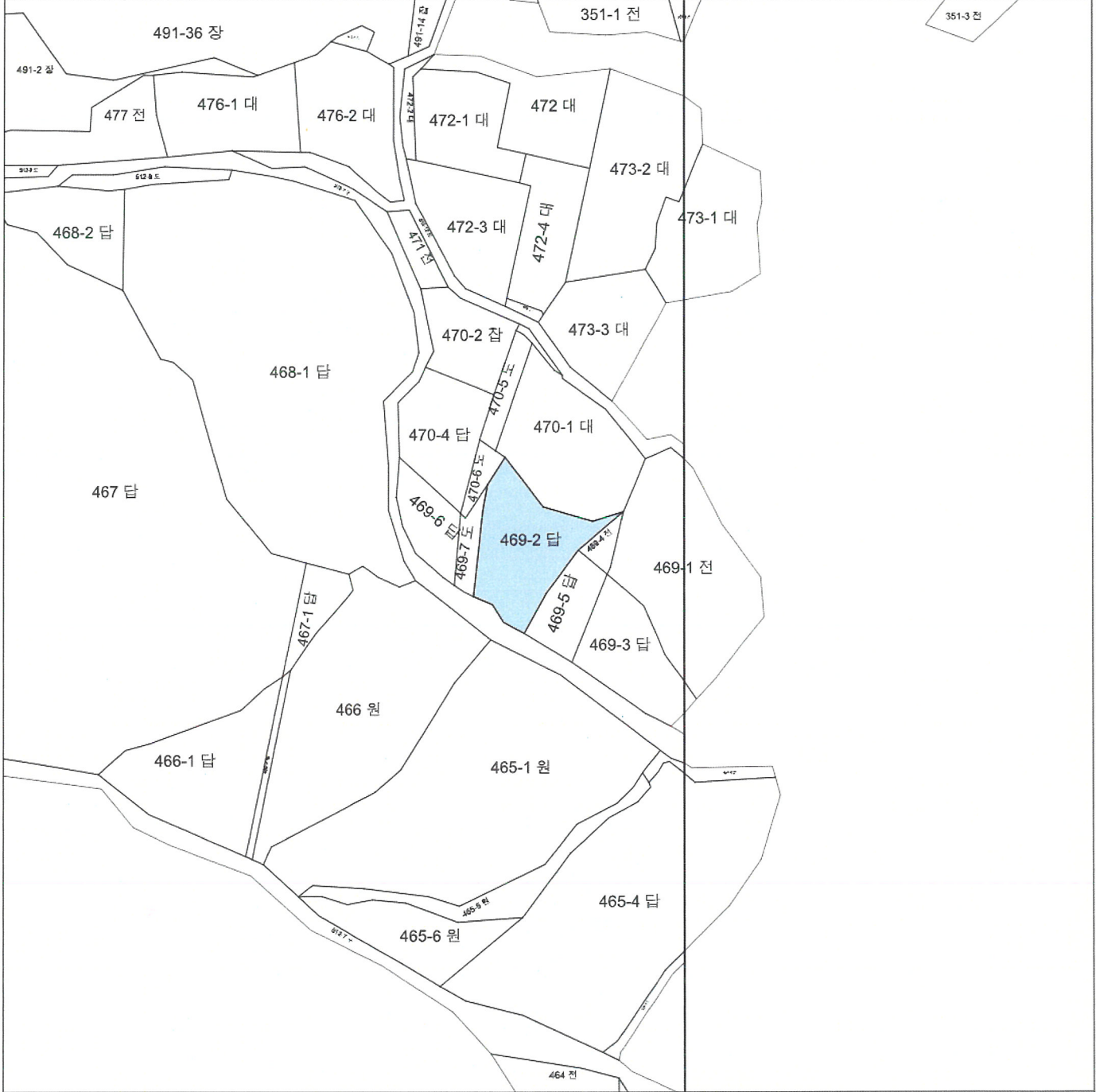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749-2260-9336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5269	처리시각	09시 22분 01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9-2번지	축척	수평:1/1200 수직: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04-6993-7290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560	처리시각	18시 14분 27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지번	469-4번지	축척	수평: 1/1200 수직: 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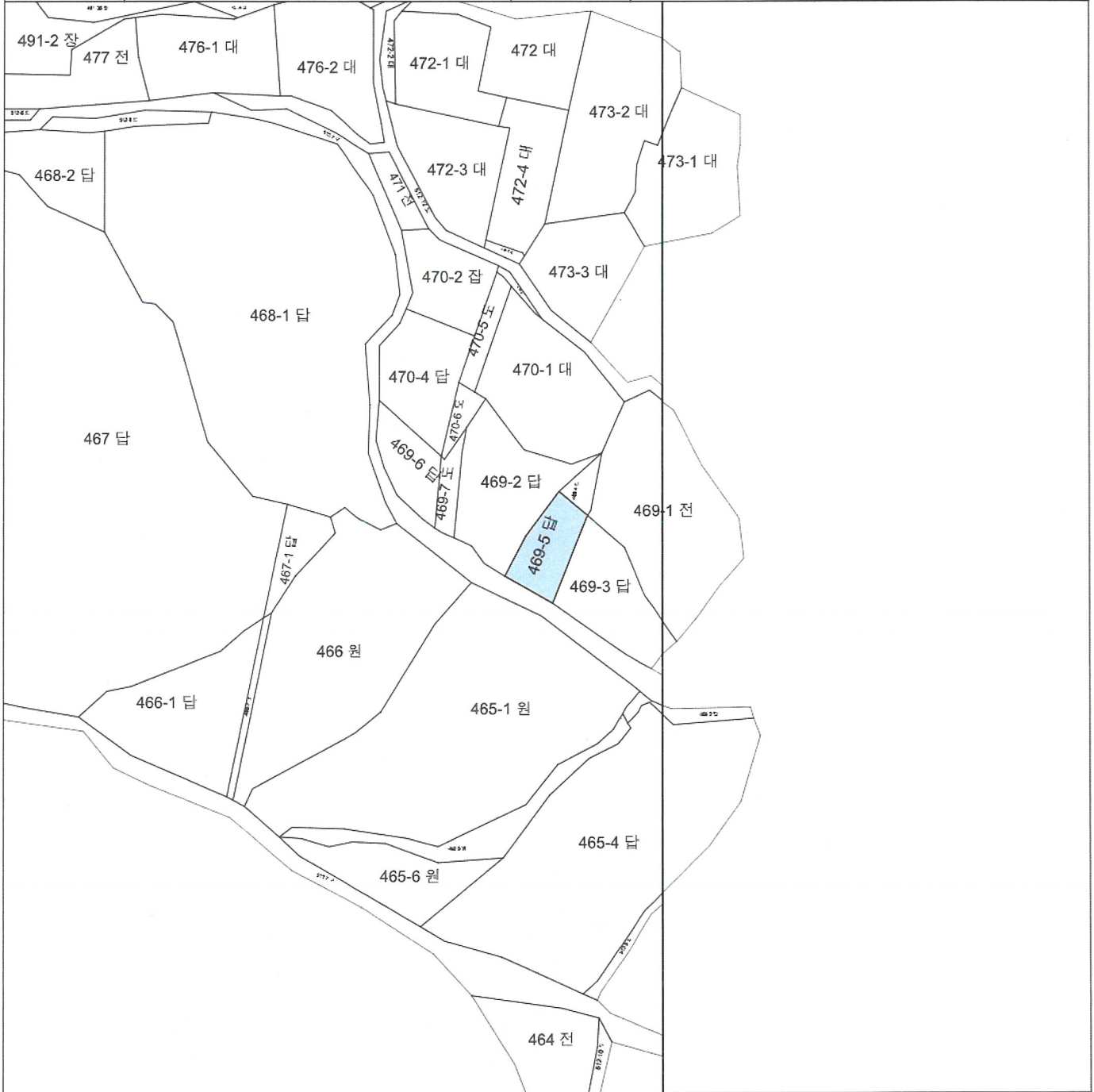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19-3773-0929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664	처리시각	18시 38분 56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69-5번지	축척	등록:1/1200 출력: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04-0923-6449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557	처리시각	18시 13분 27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지번	469-6번지	축척	수평:1/1200 수직: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03-4843-3323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552	처리시각	18시 12분 26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지번	469-7번지	축척	등록:1/1200 출력: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17-2906-8785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648	처리시각	18시 35분 27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지번	470-1번지	축척	등록:1/1200 출력: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17-8901-7724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656	처리시각	18시 36분 27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70-2번지	축척	등록:1/1200 출력: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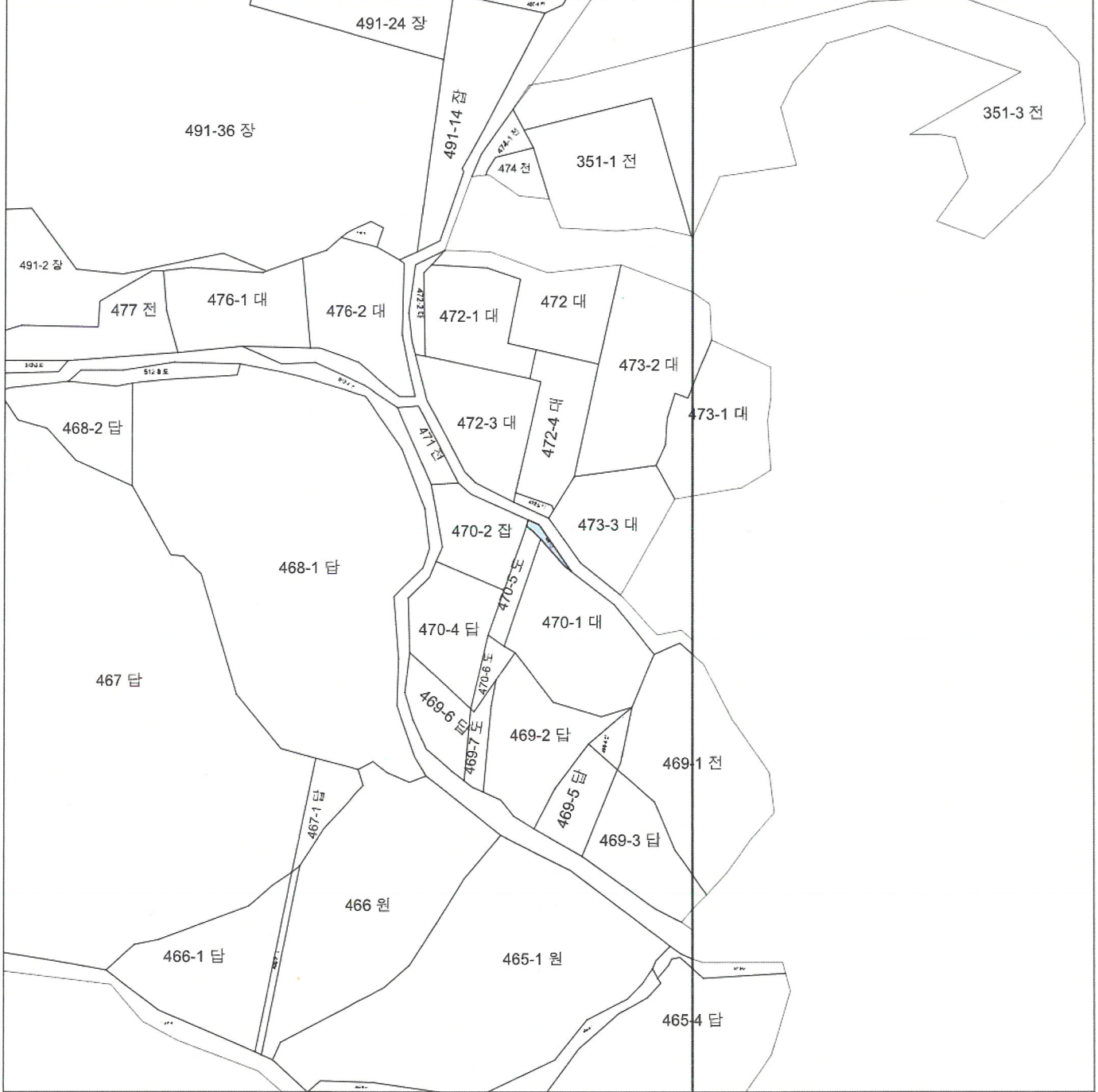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24-7852-4903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697	처리시각	18시 47분 57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범원읍 범원리	지번	470-3번지	축척	수평:1/1200 수직: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 1697-6202-8902-8385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549	처리시각	18시 11분 27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70-4번지	축척	동축:1/1200 출력: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 본 확인증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341480010434644	처리시각	18시 34분 28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지번	470-6번지	축척	동축:1/1200 횡축: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대화 감정평가법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지평프라자 201호

TEL.(031)905-9008 FAX.(031)905-9077

문서번호 : 대화 10-2310-2-0074호

시행일자 : 2024-03-25

수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8계장

참조 : 법원주사보 임동백

제목 : 감정평가회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번호			
처리과		공람		
담당자				

1. 저희 (주)대화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3-10-17자 귀 제 『2023타경6945』 호로 의뢰하신 『조성태 외 1명 소유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별첨 : 1. 감정평가서 1부.
2. 청구서 1부. 끝.



(주)대화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지사장 이무연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대화 10-2310-2-0074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8계장 귀하

— 金이백오십삼만육천육백원整 (₩2,536,600.-) —

2023-10-17 일자 귀 제 『2023타경6945』 호로 의뢰하신 『조성태 외 1명 소유물건』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관한기준'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평가수수료	1,989,450	● 평가수수료 ●
실비		(2,677,267,000x(8/10,000)+345,000) * 0.8 = 1,989,450
여비	278,000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34,000	
기타실비	5,000	
특별용역비		
소계	₩317,000	
합계	₩2,306,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	₩230,600.-	
총계	₩2,536,600.-	
기납부착수금	₩.-	
정산청구액	₩2,536,6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31020074)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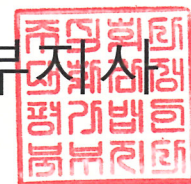
★ 계좌번호 ★

◆ (주)신한은행 : 140-007-171696 (예금주 : (주)대화감정평가법인북부지사)

◆ 사업자번호 : 128-85-39528

(주)대화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지사장 이무연



(TEL. : (031)905-9008 FAX. : (031)905-9077)